

발 간 등 류 번 호
11-1060020-000047-14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2차 세계회의 참가보고서



여 성 부

목 차

I. 회의개요	1
II. 회의 주요내용	3
III. 우리대표단 활동	11
IV. 건의 및 종합평가	15
V. 참고자료	17
1.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 중 아동 성착취 관련 내용	17
2. 대한민국의 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	21

<부록>

1. 주요연설문	59
2. 회의 결과문서	95
3. 회의관련 배경문서	111
4. 아동 성착취 관련 기사	275

I

회의 개요

- 회의명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2차 세계회의
(The Second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 일시 및 장소 : 2001. 12.17~20, 일본 요코하마 컨벤션센터
- 주최 : 일본정부, 유엔아동기금(UNICEF), 아시아아동매춘관광종식 운동(ECPAT), 유엔아동권리협약NGO그룹 공동주최
- 내용 :
 - 아동의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계회의 후속 이행상황 검토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세계 각국의 관심환기
 - 회의결과 요코하마 세계공약(Yokohama Global Commitment) 채택
- 참석 : 우리나라를 비롯 134개국 정부대표, 관련 국제기구 및 100 여개 NGO대표, 아동대표 등 3,000 여명 참석
- 정부대표단
 - 수석대표 : 한명숙 여성부 장관
 - 교체수석 : 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 NGO대표 : 정부대표단과 별도로 우리 NGO 대표 3인 참석

- 김인숙 한국지역사회복지회(Save the Children, 한국지부) 상임이사
- 정해원 이웃사랑회 국제본부 회장
- 김영수 유엔아동권리협약 NGO그룹 한국대표부

※ 참고사항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계회의
 - 일시 및 장소 : 1996. 8 27~31, 스웨덴 스톡홀름
 - 참석규모 : 126개국 1,000여명
 - 회의결과 : 스톡홀름 선언문 및 행동의제 채택
- 아동의 정의
 - 유엔아동권리협약상 만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유형(3가지)
 - 아동매춘(child prostitution)
 - 아동인신매매(trafficking in child/sale of children)
 - 아동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

II

...

회의 주요내용

□ 회의진행방식 : 회의는 본회의 및 패널토의, 원탁회의 등 3가지 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음.

- 본회의에서는 각국 수석대표들의 기조연설을 중심으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계회의 이후 각국의 진전 및 이행상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 패널토의에서는 NGO를 중심으로 아동의 성착취 예방, 보호, 재활 및 민간부문과의 연계, 아동의 인신매매 등 다양한 주제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졌음.
- 원탁회의는 아동 대표들이 함께 하는 만남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였음.

□ 주요의제 : 회의 주요주제는 다음 6가지임.

- 성착취로부터 아동예방·보호·재활
- 성착취자의 유형
- 민간부문의 역할 및 연계
- 입법 및 법 집행
- 아동인신매매
- 아동포르노그라피

□ 개막식

※ 개막식에서는 주최국인 일본의 타나카 외상, 타카마토 공주, 제1차 세계회의 개최국인 스웨덴의 실비아 여왕, 타카히데 요코하마 시장이 기조연설을 하였음.

- 일본 타나카 외상(H.E. Ms. Makiko Tanaka,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개막연설 요지
 - 1996년 스톡홀름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퇴치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동의 성적 착취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 특히 빈곤은 아동매춘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음.
 - 일본은 1999년 아동매춘 및 음란물법을 제정하고 ILO협약을 비준하는 등 모든 형태의 아동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일본 타카마토 공주(H.I.H. Princess Takamado of Japan) 연설요지
 - 일본은 역사적으로 성문제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아동의 성도구화에도 기여한다고 봄. 그러나 최근 아동의 성착취에 대한 문제의식과 법제정 등 이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임.
 - 아동의 성착취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인권의 심각한 침해이며, 후진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
- 스웨덴 실비아 여왕(H.M. Queen Silvia of Sweden) 축사요지
 - 스웨덴에서 1996년 개최된 제1차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아동의 성착취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현재 연간 100만명의 아동이 성착취에 희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공급과 수요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
 - 스톡홀름 회의 이후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 아동음란물 유통이 급증하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 이러한

신기술을 이용한 아동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

□ 본회의

※ 본회의에서는 일본, 유엔아동기금(UNICEF), 아시아아동매춘관광 종식운동(ECPAT), 아동권리협약 NGO 그룹 등 회의 주최측과 우리나라를 비롯, 각국 대표단과 국제기구들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음.

- 일본 모리야마 법무장관(H.E. Ms. Mayumi Moriyama,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 1999년 아동매춘과 음란물 금지법 제정으로 아동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됨. 동법은 일본 국민의 해외에서의 아동 성착취에도 적용 가능함. 착취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지속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원조교제”가 아동의 성착취를 미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최근 이러한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 캐롤벨라미 UNICEF 총재(Ms. Carol Bellamy, Executive Director of UNICEF)
 - 최근 성착취 피해아동의 증가는 빈곤심화, 소비문화의 발달, 통신기술의 발달, 난민발생, 인종차별 및 무력분쟁 등에서 기인함. 특히 구 소련지역에서 아동성착취 증가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의 HIV/AIDS감염확산도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음.
 - UNICEF는 교육, 법제정 등을 통한 성착취 철폐 및 피해아동의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아시아아동매춘관광종식운동(ECPAT:End Child Prostitution in Asian Tour)

- 96년도 회의 이후 아동 성 착취에 대한 인식제고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아동의 수적 증가는 우려 할 만 하며,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함.
- 아동권리협약 NGO Group
 - 국제사회는 공약을 뛰어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함.
- 각국대표 기조연설
 - 각 국 대표들은 아동의 성착취 근절을 위한 자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NGO등 다양한 비정부 주체들과의 협력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많은 국가들이 인터넷을 통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심각한 문제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함. 특히 프랑스는 아동에게 유해한 웹사이트 신고제도를 마련, 수백건의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함.
 - 대다수 국가들은 1996년 제1차 회의이래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한 인식제고가 이루어졌으나 성착취의 완전한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부족하였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피해아동의 증가에 우려를 표함. 또한 많은 국가들이 현 이주추세(migratory trend)와 인신매매와 아동 성착취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함.
 - 미국은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발달 및 보급으로 인해 아동들이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만 1,200만명의 아동들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익명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아동 성착취범들을 적발·처리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함. 인신매매와 관련, 미국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Victims of Trafficking Protection Act)”의 제정으로 국무부 인신매매 퇴치감시국(Office to Monitor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의 주도하에 아동 성착취 퇴치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함. 또한 미국은 어떠한 경

우에도 매춘아동의 처벌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가와는 달리, 매춘아동에게 일정한 형을 부과함으로써 다시 유해한 환경으로의 복귀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결과문서의 관련 조항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함

-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는 매춘아동이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제하고, 매춘아동 및 사형제도 전반에 대해 반대하는 EU의 입장을 대변함. 유럽의회는 효율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필요성을 지적함.
-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은 아동 성착취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부족이 심각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금번 UN총회가 사무총장에게 아동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승인하였다고 보고함. 또한 아동권리협약 미비준국인 미국이 내년 1월 “아동매매·매춘 및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의정서”를 비준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언급함.

□ 패널토의

※ 패널토의는 주로 NGO를 중심으로 아동의 성착취 예방·보호 및 재활, 민간부문과의 연계, 아동의 인신매매 등 다양한 주제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졌음.

- 참가자들은 아동의 성착취 방지를 위한 법제도 미비 및 집행의 부족, 그리고 자원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특히 매춘아동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함.
- 매춘아동보호소를 운영하는 미국 NGO(Children of the Night)는 멕시코, 캐나다, 폴란드 등 여러 국가로부터 보호소 운영과 관련된 자문제공을 요청받고 있다고 언급함.
- 참가자들은 이주(migration)가 아동성착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원주민 문제와 미군

부대 주변의 여성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함.

- 토의 참가자들은 아동 성착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응전략의 주류를 이룬 공급 측면뿐 아니라 성착취자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남성들의 의식개선 및 행동변화 등 수요 측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함.
- 제1차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강조되었으며, 아동의 참여를 위한 기금마련 가능성도 논의되었음.
- 참가자들은 아동친화적인 보호시스템 구축과 사회복지기능 강화 필요성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의 중요성에 합의함.

□ 원탁회의

※ 원탁회의는 주로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아동과 청소년이 참석하였고 주제는 아동성착취 방지였음. 회의 용어는 일본어와 영어를 병용하였음.

- 대다수 참석 아동과 청소년들은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공감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함.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함.
- 일본에서 참가한 한 아동은 일본에서 원조교제가 아동 성문제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말하면서, 원조교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권력 개입 등 사회적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함.
- 캐나다의 NGO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대표는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는 아동권리 신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함.

□ 결과문서 채택

- 회의결과 스톡홀름 제1차 세계회의(1996)의 약속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결과문서인 “요코하마 세계공약(Yokohama Global Commitment)”을 채택함.
- 첫 번째 장인 후속조치 부문(Our Follow-up)에서는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계회의(1996, 스톡홀름) 이후 요코하마 세계회의(2001년)까지 국제적으로 달성한 성과와 관련 법률등의 진전사항을 언급함.
- 두 번째 장인 세계공약 부문(Our Global Commitment)에서는 제1차 세계회의 선언 및 행동의제를 이행하고 아동의 성착취 철폐를 위한 노력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세부사항을 결의함.

□ 폐막식

- 동 회의는 하시모토 전 총리의 연설과 아동대표들의 공연을 끝으로 폐막함.

III



우리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 활동

- 우리나라 기조연설(12월 17일, 오후 시행)
 - 우리측 수석대표 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아동의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많은 국제규범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동들이 성착취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하고, 제1차 회의의 성과를 토대로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함.
 - 또한, 한국은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과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한 다양한 보호장치가 정비되었음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가 미성년자 성매매자의 신상공개제도 시행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설명함.
 -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 존재하는 아동유해 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여성부가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정부는 NGO 등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미래인 아동의 성착취를 위해 협력할 것을 강조함.

- 장관급 수석대표 오찬간담회 참석
 - 주 쇠 : 일본 타카마토 공주, 캐롤 벨라미 UNICEF 총재
 - 간 사 : 구삼열 주일본 UNICEF 대표
 - 일시 및 장소 : 12월 17일 12:30-14:00, 퍼시픽 요코하마 호텔 회의장
 - 참석자 : 타카마토 공주, 캐롤 벨라미 UNICEF 총재, 한국 등 52개국 장관급 수석대표
 - 내용 : 제1차 회의 이후 각 국의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예방, 보호, 재활 및 통합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환담
- 주요국 장관급 수석대표와 면담(12월 17일)
 - 독 일 : Dr. Christine BERGMANN, Federal Minister for Familie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 프랑스 : S. E. Mme Sérgolène ROYAL, Ministre délégué à la famille, à l'enfance et aux personnes handicapées
 - 스웨덴 : H. E. Mrs. Ingela Thalén, Minister,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 뉴질랜드 : Honorable Laila Harre, Minister of Women's Affairs, Minister of Youth Affairs
 - 내용 : 양국의 아동복지 문제와 내년 10월 한국에서 개최예정인 여성장관회의에 관해 논의함.
- 캐롤 벨라미 유엔아동기금 총재(Ms. Carol Bellamy, Executive Director of UNICEF) 면담
 - 일시 및 장소 : 12월 17일 18:30-19:00, 퍼시픽 요코하마 회의장 Rm. 408
 - 배석자 : 황인자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구삼열 주일본 UNICEF 대표
 - 통 역 : 정의혜 외교부 외무관

-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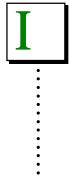
- 한국의 아동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내년 5월로 예정된 아동특총에 UNICEF측 요청대로 대통령께서 가급적으로 참가하시는 방향으로 검토예정이며, 우리나라의 분담금 증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함.
- 벨라미 총재는 금번 노벨상 수상자 심포지움에서 대통령을 뵈었다고 언급하며, 아동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와 대통령님의 관심에 사의를 표함.

※ 캐를 벨라미 총재는 2001년 2월 한국을 방문한 바 있음.

- 타나카 일본 외무성 장관 주최 리셉션참석(12월 17일(월)19:00)

□ 기타 대표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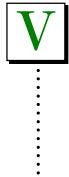
- 본회의 및 패널토의에 적극 참여
-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적극 홍보(책자 400부 배포)
- 미국대표와 면담(12월 18일(화), 8:00-9:00)
 - 한국 : 김성이(청소년보호위원장), 황인자(여성부 권익증진국장), 김영수(CRC NGO 그룹 한국대표부)
 - 미국 : Christoper H. Smith(미 하원의원), John G. Malcom(법무부 부국장)외 실무자 1인
- 내용 :
 - 한국대표단은 성매매 방지에 대해서는 여성부가,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설명.
- 일본언론과 인터뷰 실시(청소년보호위원장) : 일본 NHK TV, NHK Radio, 西日本신문, 및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



건의 및 종합평가

- 금번 회의에서는 아동 성착취의 심화 및 다변화와 관련, 국경개방 및 인터넷 기술남용 등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들이 아동 성착취에 기여한는데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이제 아동 성착취는 아시아지역의 섹스관광 등에 국한된 개도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았으며, 긴밀한 국제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됨.
- 이번 회의에서도 아동대표들이 참여하여 패널리스트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아동들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 및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번 회의에서 인신매매와 아동 성착취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그러나, 동회의 참가에 있어 아국의 아동대표가 제외되어 아국 아동의 입장을 세계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음. 따라서, 유엔 등 아동관련 주제 회의에 아동의 정부대표단 참여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아국 아동을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하는 것을 관례화시켜 아동의 권리의식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우리 대표단은 금번 회의기간 중 본회의 기조연설 및 각국 대표단 접촉을 통하여 아동 성매매자 신상 공개 제도 등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홍보하였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실시한 신상공개제도와 제1차 회의이후 이행상황을 책자로 제작하여, 각국 정부에 전달, 국가신인도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
- UN회의 등 각종 아동·청소년의 관련 회의시 아동·청소년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관련부처 특히 법무부, 경찰청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아동·청소년의 성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필요함
- 향후 개최예정인 UN아동특별총회(2002. 5.8-10)는 아동의 권리 전반에 걸친 세계정상회의로서 우리나라 아동정책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준비가 요구됨.



참 고 자 료

1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 중 아동 성착취 관련 내용¹⁾

□ 동회의 관련 이행사항

- 아동 최우선의 원칙(협약 제3조) :

1. 아동복지법(제3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2. 청소년보호법(제3조-제5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친권자(또는 친권자를 대신하는 자)와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환경에 접촉, 출입을 못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이름과 국적(협약 제7조)

1.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97년 12월 국적법 제2조 제1항을 개정하여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여 아동의 무국적 방지에 대한 협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1)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1999)를 요약·발췌하였음.

-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협약 제11조)

1.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에 대한 처벌과 해외이송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에 대하여서는 일반 형법과 그러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엄격히 처벌

-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협약 제19조 및 제 39조)

1. 형법(제287조) :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 2) : 범행의 목적이 재물이 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살해 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음.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정(1997년 12월, 시행 1998년 7월) :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 (제40조) 가정내 폭력을 범한 자에 대하여 처벌외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행위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 보호관찰처분, 보호시설 감호·위탁, 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기관 상담위탁등의 조치 병행.
4. 아동복지법 :
(제3조) 모든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
(제18조)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등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제34조) 규정에 의해 처벌

- 착취상황하의 아동

- 경제적 착취(협약 제32조)

1. 의무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15세 미만자의 고용 금지

2. ILO 협약 제138조(최소고용연령) 1999년 상기협약 비준
3. 직업안정법 : 1998년 4월 18세미만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규정 신설
4. 청소년보호법(제24조) :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유해 업소 지정하여 위반업주에게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고용된 청소년 1인당 1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5. 18세미만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엄격히 제한
6. 연소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과 최저 임금을 보호

○ 마약(협약 제33조)

1. 약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향 정신성의약 품관리법 제42조 제2항) : 미성년자에게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한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 보호법(제 26조)에서는 마약뿐만 아니라 술, 담배, 마약 및 환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포장지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를 금지한다는 표시하도록
2. 마약관리법(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취급 자격 없이 마약을 매매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대마관리법은 대마 취급자격 없이 매매 등을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거나 매매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 성적 착취와 학대(협약 제34조)

1. 형법 제242조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를 매개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윤락행위 방지법은 윤락행위를 금지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풍속영업소에서 윤락행위 또

는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4. 형법 제244조 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제조, 소지, 수입,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을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제반 조치 강구
5. 아동복지법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1. 아동복지법(제18조) :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불구기형의 아동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시키는 행위, 14세 미만의 아동을 주점 기타 접객업소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유해한 흥행·영화 기타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유해한 유희를 시키는 행위, 보호·감독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34조에 의하여 그 유형에 따라 10년 내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아동보호
2.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을 이용한 성적퇴폐행위시 10년 이하의 징역형, 청소년 이용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청소년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

2 | 대한민국의 청소년 성착취 근절 대책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계회의 행동의제 이행현황²⁾

- 대한민국은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계회의」가 열리기 이전부터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을 상업적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와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기본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34조에서는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청소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선언하고, 국가·사회·가정·국민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성폭력 및 성착취 등 성범죄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등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이처럼 대한민국은 1996년 8월에 개최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강령들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온 결과, 이제는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제도가 구축되고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실천이 생활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본 자료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제공

1. 청소년 성보호 기반구축 (지방 · 국가 · 국제적 차원의 협력 강화)

○ 법률 · 제도의 정비 · 강화

- 종전에는 형법이나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 착취 사범을 일반 성인 대상사범과 동일하게 규제하였으나, 2000년 7월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시행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범을 성인대상 성범죄 사범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 보급, 성매수 범죄 등에 대해 유기징역이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것과 병행하여 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 근절과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사 · 연구 · 교육 · 계도 기타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구 분		행 위 유 형	법 정 형	신 상 공개여부
청소년	행위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제5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공개
	업 주 등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제7조 제1항 제1호, 2호, 3호)	5~15년 징역	신상공개
	관련자	폭행 · 협박 · 선불금 등 채무 · 업무 · 고용 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매매춘을 강요한 자(제6조 제4항 제7조, 제2항 제1호, 2호, 3호)	3~15년 징역	신상공개
		청소년에게 매매춘을 하도록 유인 · 권유, 장소제공 · 알선한 자 등(제6조 제4항, 제7조 제2항 제1호, 2호, 3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 상 청소년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 (제13조 제1항)	형사처벌 면제,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	

(계 속)

구 분	행 위 유 형	법 정 형	신 상 공개여부
청소년이용 음 란 물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 수입 · 수출한 자 (제8조 제1항)	5~15년 징역	신상공개
	영리목적의 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 대여 · 배포 · 상영자 등(제8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청 소 년 매 매	매매춘 및 음란물 제작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내외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제9조 제1항, 2항)	무기 또는 5~15년 징역	신상공개
청소년에 대 한 성 폭력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 준강간의 죄를 범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자(제10조 제1항)	5~15년 징역	신상공개
	남녀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남녀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제10조 2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공개

※ 그 외 상세한 내용은 www.youth.go.kr(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청소년 성보호기구 · 재정의 확충

- 종전에는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국가시책을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1997년에 청소년 성보호 정책총괄기
구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에 따
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정부 각 부처의 업무
를 총괄 · 조정하고, 청소년 성탈선이나 성범죄를 유발하는 청소년
주변환경을 규제 · 정화하고,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의 활
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범을 감시 · 단속 ·
처벌 · 신상공개하는 한편,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
관의 청소년 성보호 시책 등을 관리 · 평가 ·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
무국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기획과, 조사운영과, 보호지원과, 선도
보호과 등 5개 과와 정부 각 부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된 중앙점검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청소년 성보호 시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이 편성되는 것과는 별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한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징수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성보호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시설의 설립이나 지도자 양성, 건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업 등의 재정지원을 위해 청소년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0년 기준 1,591억원 조성)

○ 청소년 성보호 민간단체의 활동역량 강화

- 국가에 의한 청소년 성보호 시책추진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도 청소년 성보호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성·청소년단체 중심으로 사회 교육 및 건전 성문화 조성활동 등을 전개함과 더불어 음란매체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를 단체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 민간단체 대표 등을 청소년보호위원으로 영입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산하의 자문기구로 청소년성보호활동을 전개해 온 청소년 단체 관계자로 청소년 성문화 분과위원회를 두어 청소년 성보호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 아울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청소년 성착취’, ‘질병’ 등 21세기 인류의 공통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해 주기 위하여 ‘정부간 청소년 국제교류’, ‘국제청소년 행사개최’ 등 다양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차원에서의 청소년 국제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0년 청소년분야 국제교류 실적》

구 분	대 상 국 가	교류인원	비 고
정부간청소년교류	· 10개국, 22회 -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헝가리, 핀란드 등 10개국	414(124)	
한국정부·국제기구간 청소년교류	· ASEAN, 1회	220(20)	
단체간 청소년 교류	· 6회	54(18)	
청소년국제행사개최	· 7회 (총 117국 참여)	17,329	참가인원
청소년 해외파견활동	· 6개 사업	336(87)	
청소년 국제회의 참가	· 4개 회의	21(17)	
총 계		18,374(266)	

자료 : 문화관광부

※ 교류인원의 ()는 지도자 수임.

2. 예방대책

a)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및 무료교육실시

-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지식계발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교육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있다. 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의무교육을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되,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벽지나 농어촌지역에 현재 무상 중등교육이 실시중에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을 받고 있으며(1994년 이후 중학교 진학률 99.9%, 고등학교 진학률 99.4%), 이러한 교육의 양적 확대라는 성과 위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

고 있다. 또한 모든 학교에서는 연10시간 이상의 학생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청소년이 바른 성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 성착취 유입위험군 청소년 예방보호

청소년에 대한 교육기회의 제공확대와 더불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성착취 환경에 노출되는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함과 함께 가정의 보호막을 벗어난 청소년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해 가고 있다.

○ 생계곤란 청소년에 대한 생활보호

- 한국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18세미만 청소년을 생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여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고등학교까지의 학비와 교재비 등 학업에 필요한 학업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 이들 저소득청소년들이 안정적 직업을 갖도록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직업훈련전의 준비금’, ‘훈련중의 훈련수당’, ‘식비’, 그리고 ‘훈련이후의 취업준비금’ 등이다.
-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청소년들에 대해 의료비 전체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다.

○ 요보호 청소년의 발생예방

- 이혼 등 가족해체, 산업재해증가 등으로 인해 해당 피해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38개소의 아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아동문제에 관심이 많은 지역인사 7,000명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하여 아동문제에 대한 일차적 상담기능을 수행도록하고 행정기관에 필요한 복지조치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미아의 발생을 예방하고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자에게 신

속히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를 1986. 5.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설치 · 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에서는 미아부모 상담과 미아사진 배포 및 광고를 함과 동시에 미아와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미아에 대한 신상카드를 작성 · 비치하여 보호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경찰관서와 시 · 군 · 구에 182신고전화를 설치하여 발생미아의 가정복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http://www.missingchild.or.kr>)

- 아울러 지역사회인사가 어려운 청소년을 물질적 ·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려운 청소년 결연 및 후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우아동 결연후원 실적》

구분	연도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결연아동 (명)		40,877	35,247	43,424	41,618	41,618	33,200	33,364	29,622	40,139
후원금액 (백만원)		6,201	6,297	6,969	8,236	8,236	8,172	8,782	8,804	10,371
후원자수(구좌)		81,386	82,228	70,354	73,938	73,938	74,925	73,140	61,004	74,405

자료 : 보건복지부

○ 요보호청소년의 보호

- 아동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키워지며, 가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 그러나, 아동이 이러한 환경을 가질 수 없거나 가정에서의 양육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수용, 유력자보호위탁, 친척 · 연고자 인계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게된다. 1998년에 발생된 요보호아동은 9,292명으로 이들 중 55%인 5,112명이 시설에 입소되었다. 시설보호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위탁제도가 1985년부터 실시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민간단체가 수양부모훈련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숙사 형태의 기존 아동보호시설을 점차 소숙사 시설이

나 그룹홈의 형태로 개조하여 시설아동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하에 1997년부터 그룹홈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1998년 현재 10개소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다.

《요보호아동 발생현황: 1990~1998》

(단위: 명)

연도	계	발생 유형				보호 내용			
		기아	미혼모 아동등	미아	가출아	시설 보호	위탁 보호	입양	연고자 인계등
1990	5,721	1,844	2,369	360	1,148	3,734	1,134	853	-
1992	5,020	1,481	1,813	241	1,485	3,122	1,212	686	-
1993	4,451	1,330	1,904	137	1,080	2,940	943	568	-
1994	5,023	1,386	1,781	192	1,664	2,953	927	760	383
1995	4,576	1,227	1,285	149	1,915	2,819	505	472	780
1996	4,951	1,276	1,379	189	2,107	3,161	727	479	584
1997	6,734	1,380	1,825	342	3,187	3,917	1,209	898	710
1998	9,292	1,654	4,120	277	3,241	5,112	2,353	1,283	544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c) 유엔아동권리협약내용 적극홍보

-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비정부 조직 및 단체들(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도 아동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조항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 1993년에 발족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1997년 시민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학교 및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아동권리 홍보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세계아동 복리연맹(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의 회원으로서 비영리·비정부 민간기관인 한국 지역사회복지회(Save the Children, Korea)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비디오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하여 민간인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이웃사랑회(Good Neighbors Inc.)와 SBS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송 캠페인을 1998년 12월 21일부터 한달간 매일 1회 실시하였다.

d)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캠페인 · 교육 · 홍보활동 적극 전개

- 1998년부터 YMCA, YWCA,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와 국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딸·아들 사고파는 향락 문화 추방운동’을 전개하여 사회의식 개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2000년도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상반기를 ‘대국민특별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상업적 성착취를 알리는 교육, 신문·방송 등을 통한 홍보, 책자·전단 등 각종자료를 제작·보급하였고, 특히 KBS와 함께 성보호 관련 TV 특집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였다.
- 2001년 8월에는 사회전체 성의식의 개혁을 위한 제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실시하였으며, 동 제도의 실시와 함께 안내 책자 40만부를 제작·배포하였다. 국민의 80%가 신상공개제도를 찬성하여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높은 열의와 의식수준을 나타냈다.
- 또한 1998년부터 매년 자치단체 청소년 업무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성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 업종대표, 신문·방송관계 대표자 등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회합하여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토의·모색해 가고 있다.
- 그리고 매년 전국의 보건소들이 주관이 되어 학생·정부·접객업

소 종사자·공단근로자 등 청소년 및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성교육을 실시하여 요보호청소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99년 성교육 실적》

실시기관	회수	인원
보건소	15,827회	993,179명

자료 : 보건복지부

e)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특별활동 및 부모·가정 청소년보호 기능제고

- 청소년들의 기본생활습관, 민주시민의 생활태도, 건전한 가치관 등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형성되며 이것은 대부분 부모로 인하여 이루어지므로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양육방법 및 태도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역할 강화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 한국정부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통하여 1993년부터 전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교육계 원로들에 의한 부모교육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섯 종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작되었고 각각의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 상담원의 교수 및 전국에서 초빙하여 양성한 부모교육 교수요원들에 의해서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실시된 부모교육의 실적은 234회 155,064명에 달한다. 또한 전국에서 부모교육 관련 전공분야의 대학교수급 인사를 초빙하여 2박3일간의 집중 워크샵을 실시하고,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수요원 위촉장을 수여해 왔는데, 2000년 10월까지 양성한 교수요원은 총 376명이다.
- 전국 1만여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단위별로 학부모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이 학부모회를 통해 청소년성보호 등을 위한 부모 교육자료를 발간·보급하고, 각 학부모회별로 청소년성보호 등 자녀 양육을 위한 각종 간담회를 개최·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능력 있는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를 명예교사나 마을교사로 위촉하여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의 각 영역에 참여, 활동하면서 학생자녀에 대한 이해를 제고토록 하고 있다.

《명예교사·마을교사 활동현황》

구 분	위촉위원수	학교교육지원	선도활동	기 타
명예교사	69,093	40,664	19,605	3,429
마을교사	17,995	6,764	11,127	2,077
계	87,088	47,428	30,732	5,506

자료 : 교육부('97. 2. 28 현재)

-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에 청소년성폭력방지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성매매유입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29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에는 동 프로그램운영을 더욱 확대해 갈 계획이다.

f)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감시 네트워크 및 동년생 교육프로그램 구축·운영

-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민간단체, 학교 등이 청소년성착취 등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을 감시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국가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1,010개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조직되어 청소년 성탈선유발 유해환경

감시·순찰과 함께 청소년성보호 등 홍보캠페인 전개, 교육활동, 매체물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조직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감시단	1,010	442	53	21	12	13	23	49	39	32	51	49	52	44	61	59	10
감시단원	25,478	10,334	1,265	575	486	524	522	955	1,761	1,116	1,284	1,443	1,396	998	897	1,553	372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 또한 국민들은 청소년성탈선을 유발하는 환경이나 성착취 사범들을 전국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운영하는 ‘1388’ 청소년 긴급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동 전화는 일반국민이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의 민간감시활동을 단속을 담당하는 관계당국에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 아울러 청소년 선도에 있어 동년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사회 복지사학회 등과 연계하여 2000년 또래상담 도입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집단따돌림과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동년배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

g) 어려운 청소년근로 및 자활지원

- 청소년의 무기능 유휴인력을 기능 인력화시켜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직업훈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매년 30여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을 마친 뒤에도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적극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다.

- 직업훈련과정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 시킬 수 있도록 내용별 양성·향상·전직·재훈련으로 구분하여 평생 훈련체제로 운영되며 훈련직종은 모든 직업에 걸쳐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직업훈련은 훈련 실시주체의 특성에 따라 공공직업훈련(1997년 49,257명), 사업내직업훈련(1997년 173,686명) 및 인정 직업훈련(1997년 22,101명)으로 구분된다.

h) 청소년의 상업적 성착취 근절법 · 제도의 정비 · 강화

- 청소년 성착취를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형법, 윤락행위방지법, 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형법**에서는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행위를 금지하고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기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및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그 처소 제공행위를 금지하면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풍속영업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9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적퇴폐행위 시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청소년이용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청소년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포르노제작·배포, 성매수행위에 대해 일반성인 대상 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형사처벌기준을 높였으며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보호특별대책 및 청소년성매매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 관련부처의 소관기능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성적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i) 청소년성착취조장 법률 · 제도의 수정 · 보완

- 아동의 상업적인 성착취를 유도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유통업소등 청소년 유해 업소에 청소년들이 유인·고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18세 미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규정을 신설(1998.4)하였으며, 매년 직업소개 부조리 합동단속, 허위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소개자를 추적, 고발조치 하고 있다.
- 또한 청소년보호법(제24조)에서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유해업소를 지정하여 위반업주에게는 최고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불법고용된 청소년 1인당 1천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0년도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사범을 강력 처벌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j) 청소년의 상업적 성착취 근절 위한 경제계분야 적극 동원 · 활용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의 조직망들과 시설물들의 이용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의 불법고용가능성이 있는 식품접객영업자들에게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청소년보호 특별대책」에 따른 특별교육지침을 작성하여 동업자 단체에 시달(2000. 1. 22)하고,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사)한국유통음식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사)한국휴게실업중앙회를 통하여 관련 단체 회원들에게 623회 117천명(2000년 12월말 기준)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1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상업적 성착취를 예방하고 있다.

- 또한 숙박업소 등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성매수 등 성착취행위들이 이루어질 소지가 많으므로, 숙박업협회등이 주관하여 청소년이 성행위를 목적으로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지속적으로 회원업소를 교육·계도하고 있다.

k)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중매체의 역할강화

- 청소년보호법(제8조 제14조),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제5조 제2항)에 의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심의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출판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표시와 함께 포장하여 구분·격리하고 청소년에게 유통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여하여 유해출판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징금 부과처분 또는 출판사 및 인쇄소의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내용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위원회 이외에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방송사내에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있어 청소년 유해방송을 자율 정화토록 하고 있다.
- 각종 공연, 영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청소년유해성여부 심의를 위한 공연윤리위원회, 도서심의를 위한 간행물 윤리위원회가 있고, 아동에게 역기능을 줄 수 있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내용, 비속어

사용, 폭력장면의 과다묘사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방송에서 금지되고 있으며, 방송화면에 시청금지연령(19세 미만) 또는 부모와 함께 시청해도 좋은 연령(13세 미만)을 표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그리고 제작 또는 수입된 영화는 상영 전에 연령별로 관람 가능한 정도에 따라 한국공연예술진흥회로부터 영화의 등급을 부여받아야 하며 등급은 ① 모든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② 12세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③ 15세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④ 18세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의 4등급으로 구분되어 상영되고, 음반 및 비디오물 및 영화·음반·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한국공연예술진흥회의 심의를 받고 있고, 인터넷 등 PC를 통한 음란물에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사이버문화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또한 아동복지법(제18조)은 아동에게 유해한 흥행, 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공여, 교환, 전시,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아동이 건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아울러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청소년에게 통제는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중매체별로 자율적 정화 활동을 전개토록 하기 위해 업계관계 대표자와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고 있다.

I)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가능집단대상 범죄예방교육·홍보 활동 전개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의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접객영업자들에게 「식품접객업소의 청소년보호 특별대책」에 따른 특별교육지침을 작성 동업자 단체에 시달(2000. 1. 22)하고, (사)한국음

식업중앙회, (사)한국유홍음식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사)한국휴게실업중앙회를 통하여 관련 단체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상업적 성착취를 예방하고 있으며,

- 아동의 성착취의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재범방지 및 치료를 위하여 사법부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등의 조치를 취하여 지도 · 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있다.

3. 보호

a)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 및 피해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 · 제도의 정비 및 강화

- 아동들을 보호하고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형법, 윤락행위방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동으로 청소년보호특별 대책 및 청소년성매매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성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 아동들의 연령과 특수환경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률들이 제정취지에 맞게 보호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법률과 적용연령 등은 다음과 표와 같다.

《청소년성보호 관련법률 내용》

법 률 명	적용연령	청 소 년 관 련 사 항
식 품 위 생 법	19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유통점객원 고용금지 ·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에의 출입 · 고용금지 · 주류제공 금지
공 중 위 생 관 리 법	19세 미만	·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숙박업자 준수사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 법	19세 미만	· 회전판돌리기 사행행위 영업장의 청소년 입장금지
아 동 복 지 법	18세 미만	· 요보호대상 청소년
근 로 기 준 법	15세 미만	· 취업금지 최저연령
	18세 미만	· 도덕상 · 보건상 위험 · 유해업종 취업금지
영 화 진 흥 법	18세 미만 (고교생제외)	· 청소년유해영화 청소년 관람 제공 금지
공 연 법	18세 미만	· 청소년유해공연물 청소년 관람금지
음 반 · 비 디 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	· 청소년유해음반, 비디오, 게임물의 청소년 유통금지
청 소 년 기 본 법	9~24세	· 청소년 건전활동지원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관련사항
소 년 법	12세 이상~ 20세 미만	· 청소년보호주의 원칙에 의거 비행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분보다는 소년재판부에 의한 보호처분토록 특별규정
형 법	13세 미만	· 성적동의 가능연령 13세 이상으로규정
	14세 미만	· 형사미성년자로 간주, 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
	모든 국민	· 강간 ·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처벌
청 소 년 보 호 법	19세 미만 (연나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란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유통규제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 고용금지 · 탈선청소년의 보호자, 학교장에게 안내조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 률	19세 미만 (연나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등 청소년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 성매수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b) 청소년매춘, 인신매매, 음란물 서비스 제공자 규제강화

- 형법243조에서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 또한 동법244조에서는 위의 행위를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 청소년보호법('97. 3. 7 제정, '97. 7. 1 시행)은 음란물 등 유해한 매체물 등이 청소년에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성탈선이 조장될 가능성 이 있는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다.
 - 음란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매개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다.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2000. 2. 3 제정, 2000. 7. 1 시행)은 청소년을 강간 · 강제추행 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 배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인터넷 등에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1)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2) 청소년과의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이들의 신상공개 하도록 하고있고,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 수입 · 수출한 자는 물론, 청소년 매

매춘에 관련된 업주와 수요자인 성인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c) 상업적 성착취 피해 청소년 보호 · 재활

-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들이 매매춘 범죄의 대상이 된 경우, 청소년의 동의여부를 떠나 이들을 성매매 대상이 되게 한 사회적 여건 및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성매매 대상이 된 청소년을 범죄자 아닌 피해자로 보고 이들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 선도를 위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 위탁,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위탁하고 있고 여기에서 보건, 교육, 취업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 한편 미혼여성이 임신했거나 출산을 할 경우 안전하게 분만토록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보호함을 목적으로 미혼모 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미혼모 시설에서는 입소자들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6개월 동안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출산을 도와주며, 시설 퇴소 후 자활 · 자립이 가능하도록 직업교육도 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미혼모시설은 전국에 8개소가 있으며, '99년에는 1,398명이 입소했고, '99년 말 현재 235명이 보호받고 있다.

《'99년 미혼모 수용보호 실적》

시설수	'98년 말 현원	입소자수	퇴소자수	현원
8개소	248명	1,398명	1,411명	235명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또한 가출여성 등의 윤락화 방지와 윤락여성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2000년 6월 현재 전국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에 87개소의 여성복

지상담소와 주요역, 터미널, 윤락여성집결지, 기지촌 등의 취약지역에 119개소의 간이상담소에 전문상담원 361명을 배치하여 요보호여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윤락 및 윤락 우려여성을 대상으로 견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는 선도보호 시설 2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선도보호실에서는 입소자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교육과 더불어 검정고시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성변화에 중점을 둔 상담지도를 4개월동안 보호를 한 후 필요하다면 6개월을 연장하여 보호하게 된다.

《선도보호시설 운영실적》

구분 년도	시설수 (개소)	당해연도 입소자수	퇴소자조치내역						연도말 현원	연이용 인원
			소계	연고자 인계	귀향	취업	결혼	기타		
1996	12 (1)	419 (51)	487 (51)	176 (36)	82 (8)	70	63	68 (7)	284 (34)	419 (51)
1997	13 (1)	876 (144)	715 (113)	241 (67)	222	98	7	147 (46)	445 (65)	1,160 (178)
1998	11 (1)	954 (194)	954 (190)	241 (48)	286 (19)	144 (2)	4	297 (121)	445 (69)	1,399 (259)
1999	11 (1)	749 (121)	920 (157)	409 (123)	200 (16)	136 (2)	7 (1)	168 (15)	274 (33)	1,194 (190)

d) 섹스관광객 처벌법규 운영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외국에서 성을 목적으로 아동을 착취한 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법에 의거 자국내에서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

여 처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 청소년 인신매매 방지법 · 제도 정비

- 형법이나 개별법에서는 인신매매 범죄를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중요 형사범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 형 법 :
 - 국외이송목적 매매, 국외이송행위 처벌, 매매된 자 수수 · 은닉 행위 처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형법상의 인신매매 가중처벌 미수, 예비 · 음모행위 처벌
 - 아동복지법 :
 - 아동매매, 음행강요, 음행 매개행위 처벌
 - 청소년보호법 :
 - 청소년 성적접대행위 알선 · 매개, 음란행위 강요 처벌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
 - 성매수, 성행위의 강요 · 장소제공 · 알선 및 자금 · 토지 제공 등 처벌
 - 성적목적 청소년매매, 국외이상, 국내이송 처벌
 - 윤락행위방지법 :
 - 윤락행위 장소 제공, 알선행위 등 처벌
- 또한, 외국인 윤락여성들에 대하여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윤락 여성들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본국에 송환함으로써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f) 청소년의 상업적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정부기구 운영

-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98년 특별 신설된 정부 조직으로서 2000. 2. 23 청소년성보호에관한특별법을

제정·운영하는 등 청소년의 성착취 및 성폭력을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정책 및 집행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각 지방 경찰청에서는 성폭력 전담수사반인 여성기동대를 운영하고 있고, 수사과정상 피해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등의 인권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의 수사과(조사계)와 형사과에 여경을 확대 배치(최소1인이상)하고, 조사도 피해자가 원하면 직접 출장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제정하여 어린 아동들의 인권에 대해 국민모두가 생각을 정리하는 날로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동 권리협약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별도의 보고서로 발간하여 정부기관, 민단단체, 학계 및 아동권리 연구자 등에게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에 관한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법집행자들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 등을 교육하고 있다.

g)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 네트워크 구축 및 감시활동 지원

- 청소년 성착취 근절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영업자 그룹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시민단체간의 네트워크
 - 지역단위의 청소년관련 단체, 학교 등을 연계한 청소년보호 네트워크 구축추진
 - 청소년보호 민간단체, 각급 학교 등으로 지역단위 별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1,010개 단체)구성·운영지원
 - 음란인터넷 매체물, 간행물 등의 청소년유통차단활용 민간단체 네트워크
 -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32개 단체 참여), 학부모 정보감시단

- 서비스공급자등사업체와 지역, NGO와의 상호교류 및 음란물 추방 운동 등 활동촉진
 -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업계 등 민간자율심의 활성화지원
 - 정부의 매체물 관련단체 자율심의 강화지원
 - 정보통신, 간행물, 영상물, 방송위원회 등 각급 심의기관의 수시 협조
 - 민간단체에 의한 각 매체물 분야별 전문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민단체중심의 범국민운동차원에서 음란매체물 추방운동
 - 음란물 등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주민신고보상금제도 확대운영으로 신고활성화

h) 상업적 성착취 피해청소년 피난시설 운영 및 피해청소년 원조집단지원

- 청소년들이 상업적 성착취 환경이 만연해 있는 지역에 접근하거나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성착취 피해 청소년 피난시설로 청소년쉼터, 선도보호시설, 그룹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보호활동 유공자 등 청소년보호유공자에 대한 정부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다.

《성착취 피해청소년 등 청소년 보호시설 현황》

(단위: 개)

계	상담실	쉼터	대안학교	미혼모시설	선도보호시설	직업훈련기관	약물치료기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320	112	66	22	8	23(12)	50	24	7	8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성착취 근절 등 청소년 보호유공자 표창 수여 현황》

(단위:명)

계	1997년	1999년	2000년	2001년
272	88	48	69	67 (예정)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4. 회복과 사회복귀

a) 성착취 피해청소년 사법적 보호조치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착취 피해청소년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사법절차 진행으로 말미암아 해당 청소년이 정신적 상처를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누설을 금지하거나 절차상 배려토록 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 비밀누설금지
 -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 · 성명 · 연령 · 학교 또는 직업 · 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 · 상담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 · 성명 · 연령 · 학교 또는

직업 · 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됨(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 또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서는 성착취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의식제고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건 수사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수사를 맡고있는 경찰관과 피해여성이 동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야 함과 동시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여 피해자가 사회로부터 느끼는 수치심, 모욕감, 소외감을 없애야 할 것이다.
 -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등 각 교육기관에 교과 과정에 범죄 관련 「성폭력범죄 수사요령」 등의 과정을 편성하고, 전 경찰관을 상대로 성폭력 법규 및 수사요령, 성폭력범죄 관련법규 및 수사요령,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전환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수사관을 양성 또는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b) 성착취 피해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치료 · 재활 서비스 제공

- 성폭력 등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관련시설이 설치 · 운영되고 있는데, 상담소는 개인을 포함, 누구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운영할 수 있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120개소가 설치 ·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

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27개가 설치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2000년도에 상담소 46개소 및 보호시설 19개소에 대해 운영비의 일부 및 피해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실적》

(단위: 건)

구 분	상 담 소 (개 소)	상 담 실 적			상 담 조 치			
		계	본인상담	보 호 자 상 담 등	선도귀가	시설입소	치료의뢰	기 타
1999년	46	15,475	13,418	2,057	9,691	974	736	4,074

자료 : 여성특별위원회

-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소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개인도 설치가 용이한 신고제로 되어 있다. 2000년 12월 현재 성폭력상담소는 전국적으로 6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47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연간 4천 9백만씩(지방비 포함)보조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복지상담소, 여성회관상담실 등에서도 성폭력피해상담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2000년 12월 현재 7개소가 개설·운영중이나 피해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시설입소를 기피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성폭력 피해 상담실적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피해 상담 실적》

(단위: 건)

구분	상담소 (개소)	상 담 실 적			상 담 조 치			
		계	본인상담	보 호 자 상 담 등	선도귀가	시설입소	치료의뢰	기타
1995	12	3,245	1,868	1,337	276	52	242	2,675
1996	23	10,093	5,489	4,604	1,321	279	1,044	7,140
1997	36	12,358	8,279	4,079	7,284	241	750	7,083
1998	43	24,788	16,631	8,157	113,214	340	1,079	12,155
1999	48	26,607	16,010	10,597	15,858	473	1,494	8,782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c) 성착취 피해청소년의 권리함양 업무 종사자 양성 및 교육

- 대한민국에서는 성착취 피해청소년의 권리 함양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점에 중점을 두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차원과 민간 차원의 활동을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정부차원
 - 상업적 성착취에 희생된 청소년 등의 권리 함양을 위해 종사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성상담 전문가 등의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는 한편,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가에서 공인하는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말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623명을 비롯하여 2급 청소년지도사 2,538명, 3급 청소년지도사 1,412등 총 4,573명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다.

《연도별 청소년지도사 양성실적》

(단위: 명)

연도	계	급별		
		1급	2급	3급
1993	713	-	485	228
1994	708	96	375	237
1995	715	101	361	253
1996	341	47	193	101
1997	635	131	314	190
1998	593	120	280	193
1999	868	128	530	210
계	4,573	623	2,538	1,412

자료 : 문화관광부

-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각종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에서는 2000년 8월부터 가정폭력사건수사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법무연수원은 검사와 검찰사무직 신규자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에 『여성과 인권』 교과목을 편성하여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을 중심으로 관련법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 및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가정·성폭력 담당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선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문제에 관한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찰교육기관에서는 『성폭력범죄수사요령』 등의 과정을 편성하여 피해자가 사회로부터 느끼는 수치심, 모욕감, 소외감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 NGO차원

- 대한민국정부는 상업적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들의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은 물론, 국내사회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신축하고 있다. 특히 국제연합현장과 세계인

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창립되어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정부와 공조하여 청소년문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교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연수는 크게 청소년실무지도자 연수, 자원봉사자 연수,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연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연수과정에서는 상업적 성착취로 인해 피해입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담활동지도, 프로그램지도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지방정부차원과 개별단체, 종교단체에서도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함과 동시에 상담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자체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는 아동에게 정신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들에게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이 상업적으로 성착취될 우려가 있는 위험을 줄이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성착취로 인해 피해입은 아동이 가정을 통해 원만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d) 성착취 피해청소년 및 가족 등의 치료 · 사회복귀 시스템 구축

- 성착취 등의 문제들로 인해 피해입은 아동과 부모들을 돋기 위해, 정부는 피해사실에 대한 접수를 비롯하여 각종 상담 및 치료, 시설 수용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가 1회의 전화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ONE-STOP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 우선 현장접근 서비스(outreach service)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1366, 1388 긴급전화선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성착취 피해사실신고접수, 단속 및 법률, 의료서비스 등의 제공기관과 연결기능을 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은 경찰이 운영하는 112로 직접 신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준

비되어 있다. 이렇게 접수된 피해 청소년과 가족은 정부와 각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상담을 받아 각종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0년 12월 현재 47개 성폭력상담시설에 대해 시설 별로 연간 4천9백만원씩을 재정지원하고 있다.

※ 성폭력피해 상담실적 : 4-b 참조

-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는 청소년 쉼터, 선도보호시설, 그룹홈 등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피해아동과 부모의 일시적 보호는 물론, 각종 가족치료, 가족상담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정 및 사회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보호시설현황 : 3-h 참조

《선도보호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분 류		세 부 내 용	프로램수	
인성변화 프로그램 (55)	집단지도 (21)	심리검사	4	
		심리극	3	
		집단활동·상담	9	
		행동수정	5	
	문화·교양 (34)	운동 및 생활체육	4	
		문화체험	5	
		교양 및 취미활동	15	
		자원봉사	3	
	학 습 (8)	종교교육	2	
		정서교육(강의)	2	
		시청각교육	4	
	기술교육 (28)		미용(피부미용포함) 컴퓨터 양재(봉재, 재봉, 흡파선) 제과제빵 발관리 요리(조리사) 간병인/도배	10 5 5 4 1 1 2
	진학지도 (8)		검정고시반 한글교실	7 1
합 계		90	90	

e) 피해 청소년의 성착취 환경에의 재유입 방지

- 정부는 상업적 성착취로 인해 피해 받은 청소년이 또다시 그와 같은 환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아동복지법 등은 청소년을 유통업소에 출입·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청소년 성매매 알선사업과 성착취 강요사범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국의 자치단체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338개의 사회복지관과 민간단체에서 의료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윤락행위방지법’에서는 연고자가 없어서 귀가불가능 등의 사유로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고 사회에 복귀시켜야 할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보호시설에 위탁·수용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착취 피해 아동 등을 위탁받은 선도보호시설에서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해 (4-d 참조) 청소년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선도보호시설 운영실적》

구분 년도	시설수 (개소)	당해연도 입소자수	퇴 소 자 조 치 내 역							연도말 현 원	연이용 인 원
			소 계	연고자 인 계	귀 향	취 업	결 혼	기 타			
1996	12	419	487	176	82	70	63	68	284	419	
1997	13	876	715	241	222	98	7	147	445	1,160	
1998	11	954	954	241	286	144	4	297	445	1,399	
1999	11	749	920	409	200	136	7	168	274	1,194	

자료 : 보건복지부

- 아울러 정부는 청소년 성착취를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일축시키기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딸·아들 사고파는 향락문화 추방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에 총 1,010개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25,000여명의 감시단원을 확보하여 유해환경을 척결토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종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계 등과 상업적 성착취 피해아동의 사회복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서울시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을 통해 ‘청소년보호망(Care Safety Net for Youth)’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을 실시하여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범죄피해로부터 아동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범죄예방교실 교육’, ‘사랑의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랑의 교실 운영실적》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실시횟수(회)	83	90	91	94	101	115	125	289	197	287
참가인원(명)	3,928	4,483	4,337	5,865	7,610	6,288	6,689	9,024	9,860	9,598

자료 : 경찰청

f) 청소년 성착취 가해자의 형사처벌 및 치료

- 대한민국 형법에는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법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고, 이외에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형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형법과 소년법, 사회보호법등의 규정에는 죄를 범한자로서 성행치료 등 체계적인 사회내 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봉사·수강 등의 처분으로 건전한 사

회복귀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마약, 알코올 등의 약물 복용의 중독 현상으로 인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를 명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안에 따라 범법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범법자에게 재범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함과 함께 일반적 예방효과도 도모하고 있다.

5. 아동의 참여

a) 성착취 피해청소년, 가족, 원조관계자의 조직화 및 정책참여 활동전개

- 성착취 피해청소년을 보호·원조하는 개별 보호시설 설치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은 물론, 점차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각 개별 보호·원조시설의 종사들이, 단위 시설의 벽을 넘어 정보를 교환하고 수행기능간의 연계성을 강화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협의회주관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청소년쉼터 및 그룹홈 등 민간운영 보호시설들이 연합하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전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별 협의회에서는 연고자가 없이 성착취 환경 등에 노출된 청소년보호를 위한 예방·치료 및 재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을 제안하고 필요한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기위한 의견 수렴, 정책투입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성착취예방 등 청소년 보호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사, 연구, 홍보, 출판사업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성폭력 피해자 가족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가족모임’ 등 피해자 가족단체들도 아동성폭력근절대책에 관한 정

책제안과 국민의식 조성 홍보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b) 청소년 자치활동 및 정책 참여 지원

- 정부의 청소년육성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에서는 부서 산하에 각계의 청소년 대표(20명)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단체별로도 산하에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디어나 사회문제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게 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청소년창안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방자체단체 별로는 매년 12월에 ‘청소년열린광장’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상의 청소년공간으로서 청소년 웹사이트(<http://cyber.youth.re.kr>)와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청소년 동아리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 한편, 정부 청소년보호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정책자문 기구로 ‘청소년참여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참여분과위원회’는 중·고·대학생, 근로청소년 등 청소년으로 구성되고,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주요사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보호정책 수립과 집행·평가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소리’ 기자단을 구성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 성착취 근절 등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의 소리’ 기자단은 2001년 8월말 현재 중학생 36명, 고등학생 59명, 대학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내 ‘청소년소리기자단 전용 사이트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청소년 유익정보 제공활동,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활동, 인터넷 에티켓 홍보 및 유해정보 신고활동, 청소년보호정책 토론, 자문·제안·홍보활동등을 수행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경찰은 1999년 10월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을 발대하여 학교 및 선도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아동 스스로가 각종 범죄의 제반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폭력방지활동’, ‘왕따·불우학생 및 저학년 어린이 도와주기’, ‘청소년선도활동 등 경찰관 합동근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보호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예경찰 현황》

대상 학교(개)				실시 학교(개)				명예경찰(명)			
소계	초등	중등	고등	소계	초등	중등	고등	소계	초등	중등	고등
10,230	5,511	2,756	1,963	7,478	3,986	2,196	1,296	43,791	22,250	12,909	8,632

자료: 경찰청

부 록

1. 주요연설문
2. 회의 결과문서
3. 회의관련 배경문서
4. 아동 성착취 관련 기사

1. 주요연설문

◎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61
◎ 일본 타나카 외무장관 연설문	65
◎ 일본 모리야마 법부장관 연설문	69
◎ 유엔아동기금 캐롤밸라미 총재 연설문	77
◎ 미국대표 연설문	87

Republic of Korea

Check against Delivery

Statement

by

**H. E. Mrs. Han Myung-sook
Minister for Gender Equality
Republic of Korea**

at

**The Second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17 December 2001
Yokohama**

Madame Chairperson, excellencies, distinguished delegates, ladies and gentlemen,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join all of you on this occasion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akes stalk of progress since Stockholm and renews its commitment to protect all children from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Now more than at any time in history, we have an impressive array of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that safeguard children's well-be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lanked by two Protocols, has achieved near universality. The Protocol on trafficking supplementing the Convention on Organized Crime, as well as relevant ILO conventions, combined constitute a protection mechanism for children against the most intolerable forms of exploitation.

The reality, however, for many of our children is bleak. The prevalence of materialism, consumerism, and unchecked development and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have all contributed to creating a harmful environment where children are exposed to sexual exploitation. Children who are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suffer from grave psychological and physical trauma and are scarred for life.

This Session of the Congress agains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significant in that we can build on the achievements of the first Congress in shedding light on this serious phenomenon. Concrete action must be taken to combat sexual exploitation, and at the same time, preventive measures should be sought. I am particularly happy to see many child delegates here today, as

children themselves must be educated on the grave consequences of sexual exploitation and empowered to resist voluntary or involuntary sexual exploitation.

Distinguished delegates,

The Republic of Korea fully supports international efforts to protect children, including the Say YES for Children initiated by UNICEF. We believe that activities of various NGOs tie in to ensure children are given a nurturing, safe environment and support the expanded role of the civil society in eradicating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s for its part, Korea has two main bodi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and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dealing with child-related affair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with a mandate in the promotion of women's human rights, particularly girls' welfare, will work together with relevant bodies to help eliminate harmful environment that put children at risk.

In January 2000, my Government revised the Child Welfare Act, which forms the backbone of legislative framework for combating increasing child abuse. In accordance with this measure, a hotline and emergency alert system for immediate reporting of child abuse has been installed and is in operation.

Moreover, in order to preven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he "Youth Protection Act" was passed in 1997, and the "Youth Sex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00, according to which guidelines were established. The introduction of public notification system in

August 2001, marked a major turning point in Koreas efforts to prevent youth pro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is measure, a list of offenders prosecuted for child sexual exploitation has been disclosed twice. Moreover, my Government has been working closely with local governments and NGOs to protect youth from harmful environment, including screening of both online and offline materials and pornography involving minors. Various activities led by the civil society and schools designed to protect youth security are unfolding. These include movements to monitor and clean up school zones and to educate youth on sexuality.

Distinguished delegates,

This congress will be a historic opportunity for the world community to recall once more the pledges made at the previous congress and renew our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and goals of the 1996 Stockholm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The Korean government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work toward eradication of child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I look forward to a constructive discussion during the next 4 days.

Thank you.

Statement by Ms. Makiko Tanaka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Japan
at the Second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Yokohama, Japan

Your Majesty, Your Imperial Highness, ladies and gentlemen,

May I first of all extend my most sincere welcome to all of you, as the Chair of the Congress, and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Japan.

Japan's Goodwill Ambassador for UNICEF, Ms. Tetsuko Kuroyanagi, who is my close friend, told us of her impressions following her visit to Afghanistan this past July.

"Seen from the viewpoint of adults," she said, "there is nothing but 'despair' in Afghanistan. A three-year-long drought. No food, no water. The civil war is still going on. Despite these difficulties, children cheerfully say, 'I want to become a school teacher!' A boy shepherd who had his leg blown off by a landmine is given an artificial leg and says, 'I am so happy! I can now walk and live with the sheep again!'" Ms. Kuroyanagi thought to herself, "Children are wonderful. They never lose hopes."

I myself also met those hopeful children when I visited an Afghan refugee camp in Pakistan last month.

Not all children are born into this world under equal conditions, as you know. Some are born into affluence and happiness, others into poverty or war. Some are born with grave illness. Even so, newborn babies are entirely innocent and lovely, and fully trust the adults around them. Children are helpless; they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at birth all the irrationalities of the world. Nevertheless, how much hope and happiness they bring to us!

Ladies and gentlemen,

When we turn our eyes to this world, there is no end to the terrible

acts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hroughout the world. Children i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like are suffering from this problem, which takes various forms and has many causes.

Five years ago, we gathered in Stockholm to bring an end to these hateful criminal acts. Today, despite our efforts, the situation is getting even worse. Many children are still forced to work in the sex industry and exploited through child prostitution and pornography. The crime rings are getting more and more crafty,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s posing an increased threat. Many countries including my own are struggling with these social diseases.

Child victims often find themselves in misery. Besides physical problems such as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mental trauma can leave children in agony for the rest of their lives. Social prejudice often makes the social reintegration of child victims difficult. Poverty deprives children of access to education. As a result, they have no choice but to turn to prostitution as a way of life, and they are then trapped.

This is a vicious circle. How many girls are engaged in prostitution to support their families despite the threat of AIDS!

Ladies and gentlemen,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a grave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Dignity of children as individuals must be respected. Neglecting children's rights and dignity and exploiting them is equivalent to denying our own future. Adults should bear this in mind. Toward the elimination of this unforgivable act, resolute and immediate action needs to be taken in every country, every region, and all over the world.

The first thing to do is to further promote cooperation among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in order to strengthen the network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he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adopted in Stockholm raised awareness in every corner of the world and worked as a guiding principle in many countries, leading to the introduction of various legislation and policies.

In Japan, parliamentarians took the initiative in developing the Law for Punishing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which took effect in 1999. In addition, Japan concluded ILO Convention No. 182 concerning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r in June this year. As an important pillar of "human security," Japan will seriously tackle this issue, work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ICEF, and construct close cooperative ties with Japanese and overseas NGOs.

Ladies and gentlemen,

A society always sensitive to the needs of children, I believe, is a society that can fully develop their rich potential. We bear responsibility for building an environment in which all children can grow up with abundant love and free from fear, and thus develop their possibilities to the fullest extent.

Children are our future. Children are the common fortune of all humankind, a fortune that knows no national borders.

Ladies and gentlemen,

Here in Yokohama, let us declare to the world our firm resolve to fight agains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Keynote Speech by Ms. Mayumi Moriyama

Minister of Justice of Japan

at the Second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Yokohama, Japan

Your Majesty Queen Silvia, distinguished participants, ladies and gentlemen: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hat the 2nd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being held here in Yokogama and personally filled with deep emotion and happiness, as I have always been very much concerned and deeply involved in children's issues as both a citizen and a member of the Diet.

As you all know, the 1st Congress was organized in Stockholm in 1996, in response to the proposal and assistance of Her Majesty Queen Silvia of Sweden who is here today.

To my regret, I couldn't attend that Congress at the time, but my fellow Diet members who participated in it told me that they strongly felt that the awareness of Japanese society on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was not sufficient and that, in this respect, Japan lagged behind in the field of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With this Congress as a turning point, these Diet members, together with interested private lawyers and members of NGOs who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started to tackle it earnestly with united efforts.

In this sense, it may be said that the 1st Congress in Stockholm provided Japan a stronghold to establish a route to the enactment of a law entitled "The Law Punishing Acts Related to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nd for Protecting Children". Initiated and enacted in 1999, this law epoch-making going against commonly accepted ideas of Japanese society prevailing in those days.

However, the problem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deeply

rooted in society and the patterns of exploitation are becoming more and more diverse in this age of high technology, It is not the kind of problem that can be easily resolved by simply enacting laws but requires our constant attention, proper countermeasures and enforcement thereof in the future. Also,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concerning children, it is essential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society and, for this, cooperation amongst the government, international organs and NGOs is indispensable.

Therefore, I think it is of utmost significance the this 2nd Congress has been co-organized by parties, UNICEF, ECPAT, NGO groups and the Government of Japan

(National approach)

We cannot deny the fact that all over the world there exist adults who pay a nominal amount and abuse young girls treating them as sex objects and many who gain profit by producing pornographic pictures of children which is a form of sexual abuse or commercial exploitation of children.

Further, it is true of some developing countries that, as a result of poverty or lack of education or sexual discrimination, a number of children are sold to brothels and forced to engage in prostitution to earn their livelihood.

While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and the rapid progres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enefit our lives in various fields, excessively speedy progress gives rise to distortions in society and thus what we call the "negative sides of globalization" come out in various forms.

Among others, in particular, the environments surrounding children have changed considerably and new forms of menace, including the problems of the selling of child pornography through use of the Internet, are becoming a grave social concern.

Japan, for one, has been worried about the worsening situation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the midst of the diversification and globalization of society.

For example, we have a Japanese word "enjo-kosai" which is symbolic of the lack of ethics or morals in Japanese contemporary society.

This is a word invented by the mass media which means compensated dating, that is, a child offers sexual intercourse in return for pecuniary benefits such as money, and this word has the effect of weakening the impression of the immoral or anti-social nature of the act of prostitution.

The impression of the immoral or anti-social nature of the act of prostitution, the dissemination of this word "enjo-kosai" clearly shows the expansion of the "merchandising of sex with a child". Also, there is the deplorable tendency of the media to treat it as a kind of fashion.

While in Europe and America the drafting and revision of laws to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have been taking place, in Japan, too, a movement to have a new law,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to punish the acts of adults as crimes infringing upon the rights of children has been promoted among Diet members since around the beginning of 1997.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is problem was heightened b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s well and, as I was directed by Mr. Yamazaki, Chairman of the Policy Research Council of the party, I became the moderator for the problem and, in June 1997, the then three Government parties, including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nd the New Party Sakigake set up a project team to draft a bill prohibit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

Through this team, lively debates were conducted at over 30 meetings and we found, among others, that the relation between, child pornography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or "the rights to privac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was a very thorny issue. In the meantime, the parties in power changed, which resulted in discontinuance of the debate and further complications for the team for some time.

However, from the basic standpoint that enactment of a law was absolutely necessary, it was decided to prescribe in law a bare minimum to which everyone could agree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all the parties, including the Opposition benches, and also with the moral support of former Prime Minister Hashimoto and then Chief Cabinet Secretary Nonaka, the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Law was approved and enacted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May18, 1999

It took about three years after this problem was taken up politically in Japan and about two years after the debate to prepare the bill was started and in this way Japan managed to take a giant step to ensure she was not far behind the world community.

This law has made it possible to strictly punish, as a crime, the act

of performing sexual intercourse with a child under 18 years of age in return for remuneration and the act of producing pornographic pictures of a child among others.

Also, any person who traffics in a child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or produce a pornographic picture of the child or transfers a kidnapped or trafficked child overseas from the country where the child normally lives is strictly punished. These crimes are subject to punishment, whether committed in Japan if he commits the act of procuring prostitution overseas.

Another important point of this law is protecting children who suffer harmful effects through sexual exploitation, mentally and physically.

Specifically, the law requires that special consideration be paid to children at the stage of investigation and court proceeding and that the officials be trained. It further requires that publication which may identify child victims be prohibited and that various other measures be taken to consider and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Furthermore,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was amended in May 2000 by which it was now become possible to have a suitable person accompany a child victim of prostitution or of other crimes when the child testifies at a criminal trial or have the court install a screen between the witness and the defendant and, further, a new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enable the court to examine a witness at a place other than the courtroom through the use of video monitoring.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our system has been improved to give

special consideration to children to avoid their undergoing unnecessary suffering at trial.

Now, let me cite an example of application of the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Law. A Japanese national was prosecuted for the crime of producing pornographic pictures of Thai girls in Thailand and was convicted by the court.

When, we consider that if Japan had not this law, no action would have been taken in a case like this, we are pleased with the success of enactment of this law but, on the other hand, we hold mixed feelings at knowing that cases like these committed by Japanese nationals are still taking place.

In November last year, the Child Abuse Prevention Law was enforced. We hope that, through this law, measures to solve to the problem of child abuse will be strengthened, contributing to the eradication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which is closely connected to the abuse of children.

Since we intend to punish as a crime an act which was not previously a legal problem, being only subject to moral restrictions, it is necessary first to convert the people's way of thinking, and establishment of a law is only an initial step.

From now on, it is important to heighten people's consciousness so that they will never condone child prostitution or child pornography and, needless to say, this responsibility lies with each of us who compose the local community.

The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Law which was enacted, based on the initial thought that first "it was important to make", is subject to review three years after its enforcement, which is, in fact, next year. A lot of people (more than expected) were punished for these crimes after enforcement of this law, and I strongly feel that society as a whole should tackle the problem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from various angles including family and education. When reviewing this law in the future, not only the problems which were discussed at the outset but also the problem of how to handle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or those cases in which cellular phones are used will have to be carefully considered.

Internet crimes are being debated on an international level at present at the Government-Private Sector Joint High-Level Meetings on High-Tech Crime organiz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8.

In order to tackle the problem of the crime of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I believe it is important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business world such as those from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Closing)

I would like to conclude my statement, wishing sincerely that, with this 2nd World Congress as an impetus, more and more people will gain a greater understandings of the problem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build a society in which the rights and dignity of children are highly respected.

Keynote Address by Ms. Carol Bellamy
Executive Director o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t the Second World Congress agains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Yokohama, Japan

Mr. President, Excellencies, Distinguished Delegates - and All the Young Participants with us, whose voices are at the heart of the struggle for child rights:

Five years ago in Stockholm,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sent a forceful and unequivocal message: that children are not property to be bought and sold; that they have fundamental rights that must be promoted and protected - and that in fulfilling those rights, their views must be heard and acted upon.

Mr. President, we are here today to reaffirm that pledge - and to see it implemented with all possible dispatch.

As the Stockholm Congress acknowledged, there is no one solution to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of children, but many - each tailored to the diverse national, local and cultural realities in which these affronts to child rights originate.

But in designing those solutions, let us be clear: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of children is nothing less than a form of terrorism - one whose wanton destruction of young lives and futures must not be tolerated for another year, another day, another hour.

Mr. President, the facts are well known to all of us. Each year, millions of children - boys as well as girls - are bought and sold like fresh produce, commodities in a global sex industry steeped in greed and unspeakable cruelty.

Trafficked within and across borders, press-ganged into prostitution, pornography and other intolerable forms of child labour, they are

overwhelmingly drawn from the ranks of the most vulnerable - refugees, orphans, abandoned children, child labourers working as domestic servants, children in armed conflict - and those whose sexual abuse began at home or in other familiar surroundings.

Distinguished Delegates, you have before you an historic opportunity to make a frank and honest assessment of how far we have come since Stockholm - and to summon the resources and the political will to end the abuse that continues to strip countless children of their rights, their dignity, their childhood - and often their very lives.

It is fitting that this Second World Congress is being held in Japan, where the efforts of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cluding NGOs, the media and other elements of the private sector, are together showing how to change the world with children.

The Government of Japan has given high priority to underwriting prevention programmes, enforcing tough national legislation outlawing child prostitution and pornography - and supporting NGO programmes to assist child victims in developing countries.

On behalf o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let me join in extending deep thanks to the Government of Japan for its extensive work in preparing for, and now hosting, this Second World Congress - and for inviting UNICEF, ECPAT International and the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serve as co-conveners.

And I want to pay tribute to the many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who are part of this World Congress - especially the NGO community, whose work in extending assistance and

raising public awareness began long ago - and has immeasurably advanced the cause of sexually exploited and abused children.

Let me also thank the many other partners who have made this event possible, including the Government of Swed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Japan Committee for UNICEF.

Mr. President, because of the Stockholm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there is now greater public awareness of the appalling scale of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which afflicts every corner of the world, from the richest countries to the most impoverished.

Most importantly, we have seen how the exercise of leadership, by governments as well as by every level of civil society, can advance the cause of child rights - in this case the right of every child to be protected from all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The lion's share of responsibility for ensuring child rights and well-being rests with governments at the highest level - and those obligations are set forth in the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atified by almost every country on Earth, it is a document that proclaims the right of all children to be protected against dangers that hamper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from armed conflict and disability to racial and ethnic discrimination and all forms of neglect, cruelty and exploitation.

It is in line with those principles that nearly 50 countries have now moved to draw up national plans of action to combat sexual exploitation and assist victims. Measures range from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bodies to protect child rights; reform of juvenile-justice systems; training

of police and judicial authorities; and all-out crackdowns on those who sexually exploit children.

Because of such steps, we have seen an increase in police actions growing out of cooperation among national law enforcement groups and Interpol.

We have seen stepped-up involvement by the private sector, particularly in the tourism and Internet-service industries.

And we are seeing the commitment of more resources on a regional basis to combat sexual exploitation, in line with efforts like those of the European Commission.

At the global level, we have seen the adoption of three major treaties that address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ILO Convention No. 182, which calls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prostitution and pornography one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the Protocol on the prevention of trafficking of children and others, part of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an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is case a measure aimed at ending the sale of children, as well as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The Protocol will enter into force next month, thanks to the example set by the first 10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it: Andorra, Bangladesh, Cuba, Iceland, Kazakhstan, Morocco, Norway, Panama, Romania and Sierra Leone.

Finally, Mr. President, we are seeing a greater emphasis on the role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themselves in ending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It is a trend dramatised not only here, but by

young people's conferences recently in Manila and Victoria, Canada - and just this week in Kawasaki City.

These are occasions that give exploited youth a voice in the fight to eliminate some of the most difficult and shocking obstacles to the realisation of child rights. Participants are vocal, they are visible - and yet they are not re-victimized or sensationalized. They feel safe in sharing their stories. We need to be guided by such participation, not only because it is a basic right, but because it will help us find ways to repair the deep damage that is done to sexually exploited children. So we are eager to hear what the young people have to say about the outcome of the Kawasaki City proceedings.

And yet, Mr. President, for all these advances since Stockholm, sexual exploitation for profit continues to blight the lives of millions of children.

Indeed, while there is relatively little official data, we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on the rise.

The proliferation of armed conflict and the displacement of whole populations; widening disparities within countries and around the world; increased consumerism, widening of 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roads, air transport and electronic and satellite media and connec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 all help create conditions that fuel rising demand.

There is also mounting evidence of a complex link between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the ongoing spread of HIV/AIDS in the

developing world and among the countries of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Children who are forced into the sex trade - which a new UNICEF Report, Profiting From Abuse, puts at a million a year worldwide - are exceptionally vulnerable to contracting the virus that causes AIDS.

The high infection rates among teen-age girls in some hard-hit countries appear to be linked to a belief among HIV-positive men that they can cure themselves by having sex with virgins.

And data presented by African delegates at a recent preparatory meeting in Rabat suggest that a vast number of children who have lost one or both parents to HIV/AIDS become sex workers out of desperation.

Mr. President, it is hard to imagine a more difficult and shocking obstacle to the realisation of human rights than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Yet it is only one element of the even more pervasive and deeply rooted problem of sexual abuse, which often begins in the home, at the hands of a close relative or friend.

Children who are sexually abused find their world turned upside down. It makes enemies out of the very people children look to for protection - those they know, love and trust. And because it can happen where children live, learn and play, familiar places like home or school can become forbidding and dangerous.

The vast majority are denied their right to education - and even to the briefest moments of leisure and play.

The desperate vulnerability of such children is only heightened by endemic factors like violence, drugs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Because they are fearful of further abuse, including abuse by the authorities, such children typically have little recourse to the law. And those who return home may find themselves stigmatised by their own families and communities.

UNICEF's objective in this crisis is two-fold:

- To decrease the risks of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through full access to education and adequate legislation;
- And to ensure that children trapped in abusive or exploitative situations are not only freed from those situations, but that they have access to legal aid, protection, secure housing, economic assistance, counselling, and health and social services - in short, the services they need to make a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from their ordeal.

Above all, Mr. President, they need love and acceptance.

To sustain this kind of work, global partnerships are crucial. To this end, UNICEF supports the global NGO Support Group, which links key NGOs with United Nations partners, including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Such partnerships are already helping to improve legislative measures, law enforcement and programmes for the recovery of children through alternative education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Mr. President, Excellencies, Distinguished Delegates:

We already know a great deal about what must be done to eliminate sexual trafficking and abuse of children. But to succeed, we must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ction at every level of every society.

Governments and media outlets, must have the courage to end, once and for all, the shameful silence that keeps commercial exploitation and abuse a secret. That means shining light on the problem, using public information campaigns, increased media coverage, more sophisticated monitoring and sharing of information, educating children about sexual abuse from an early age at home and in school.

This includes working together to identify and bring to justice culpable individuals - knowing that it is often the very adults entrusted with the care and protection of children who sexually exploit children. And it means moving forcefully against criminal networks, whose global role has been under scrutiny by the UN 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

We must emphasise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 which can empower children and families to protect themselves.

We must confront gender discrimination in all its forms, for only by ensuring girls and women full equality and opportunity in all spheres of life can we begin to attack the roots of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Although girls are clearly the vast majority of the abused - a consequence of their low status in many societies - boys are also targets of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 and both need the benefits of education.

Racial inequality and ethnic discrimination must also be confronted, for they are factors that often determine who is sexually exploited and who is spared.

Mr. President, the sustained realisa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hinges not only on what governments do, but on the outcome of partnerships involving a broad range of allies in civil society - partnerships based on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rights of all human beings.

The global movement that produc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helped generate pressure to protect the rights of all children, including children in war; children performing hazardous or exploitative labour; children exposed to violence; children in extreme poverty; and indigenous and disabled children.

Now it is up to all of us - including governments, law enforceme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all levels of civil society - to see to it that the elimination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is accorded the same urgent priority.

Thank you.

**Opening Session Statement
for the
Second World Congress on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John G. Malcolm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Criminal Divisio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December 17-20, 2001
Yokohama, Japan**

Distinguished delegates,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United States, I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for the graciousness and hospitality of the Government of Japan, I would also like to thank Japan, ECPAT International, the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UNICEF for co-sponsoring this extraordinary event.

As we gather here in Yokohama from all over the world, we should be proud of our accomplishments during the five years since we met in Stockholm. But we all know that our job will not be done until predators are stopped from preying on our children, until our children are safe at home and on the Internet, and until all our children are free from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so that they can grow and mature in healthy environment, and are given the chance to lead happy and productive lives.

Although the world's population continues to grow and many nations have continued to develop since we last met in Stockholm, emerging technologies and ease of travel have also made the world, in a very real and remarkable way, a smaller place.

The Internet is rapidly transforming the way all of us communicate, educate, debate the issues of the day, and buy and sell goods and services. The Internet empowers people to share aspirations and common experiences, and to broaden their horizons. It is indeed a bold new world. Equally, and sadly true, this powerful new medium enables wrongdoers to commit evil acts in new ways and with greater ease.

It has been estimated that, in the United States alone, approximately 12 million children log on to the Internet every day, and the number is

growing rapidly. When a child connects to the Internet, that child has, in effect, left the safety of his or her home for cyberspace, where he or she can travel all over the world with just the click of a mouse, and is vulnerable to the online entreaties of child molesters and exploiters, who act in relative anonymity. Given this reality, we must all devise new strategies to confront offenders.

The United States is very proud of its record of addressing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t both the federal and state levels. Even prior to the Stockholm Conference, all of our 50 states and territories had laws outlawing child pornography, prostitution, and exploitation. I am pleased to state that our federal laws are even stronger today than they were then. Since Stockholm, the United States has broadened the scope of services provided to the victims of CSEC, has expanded the coverage of its CSEC laws, and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enalties for CSEC offenders - in some cases, up to life imprisonment.

Of particular note is the Victims of Trafficking Protection Act, a sweeping new law, which among other things, provides greater tools to go after those who traffic in children, and establishes an inter-agency task force, that is being chaired by the State Department, to coordinate and implement provisions of the law. Pursuant to this law, the State Department has also recently established the 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The process of improving our laws is, of course, ongoing. As our collective experience exposes flaws or weaknesses in our laws, the Bush Administration will work with Congress to fix them. For example, the Bush Administration has proposed, and Congress is currently

considering, ways to toughen our laws against the sex traveler and the sex tourist operator, to punish those who travel, and who arrange such travel, into and out of United States to sexually exploit our children and your children. Most significantly, the Bush Administration has proposed the elimination of a pre-existing intent requirement when people actually commit these heinous offenses. In general,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refine its laws to technological change, to advances in investigative techniques and tools, and to the needs victims - and we would call on other nations to do the same.

President Bush recognizes, however, that laws, no matter how well drafted, are not going to stop those who sexually exploit children if they are not backed up by strong law enforcement. Various agencies throughout the federal government, including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the Customs Service, and the Postal Inspection Service, working closely with local and state law enforcement officials, investigate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CSEC cases each year.

The United States has more than doubled its annual rate of convictions since Stockholm and, despite the recent and renewed focus on terrorism, we will continue to pursue CSEC cases even more aggressively in the future. In addition to our strong multi-agency approach to child pornography, we have active prosecutions against those who exploit our youth through prostitution. For example, two years ago, we broke up a multi-generational, family -run business that sold children and youth for sexual purposes night after night in states throughout the Northern United States. Federal prosecutors in Atlanta, Georgia are currently preparing to try the last 2 of 15 defendants - the other 13 having already pled guilty - who ran a prostitution ring that marketed

11-16 year old girls in cities throughout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As I alluded to before, the fight against CSEC is truly an international effort. Since the Stockholm Conference, we have been pleased to work with many of you in this fight. As part of that effort, the United States was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ratify ILO Convention 182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r, and is giving immediate attention to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ur Department of Labor has enthusiastically supported the ILO's International Program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r by funding projects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that rescue children from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and provide them with trauma counseling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Although there is clearly more work to be done, we have enjoyed many successes together. One such success was Operation Cheshire Cat, which was part of the international Operation Cathedral, in which our Customs Service worked closely with the United Kingdom's National Crime Squad and other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combat a worldwide child pornography trading ring involving more than 100 suspects in 14 countries.

Recently, working with Europol and the Royal Thai Police, the United States was able to apprehend Eric Rosser, the first sex offender to be included on the FBI's 10 Most Wanted List. Mr. Rosser, a well-known musician and teacher, molested children on at least two continents. Through our cooperative efforts, Mr. Rosser will be spending the next several years in prison-where he can't molest children and where he deserves to be.

President Bush is proud of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providing training at home and throughout the world to law enforcement and social service personnel about how to root out CSEC offenders and how to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and comfort to the child and youth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We have met and formed partnerships with the organizations of civil society - includ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provide the services and programs to youth and families, and outreach workers who protect and steer at-risk and exploited youth back on a path towards safety and productivity. Our Departments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Labor, and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re pleased to work with NGOs through various programs to provide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including child victims of child prostitution, with housing, shelter, mental and physical health services, and job training.

While on the topic of child victims of child prostitution, it is with some regret that I digress for a moment to talk about the proposed outcome document from this conference. The document envisions a world in which child prostitutes are viewed solely as child victims and are not criminalized or penalized. This is indeed a laudable goal. Nonetheless, in instances in which child victims of prostitution have not voluntarily sought social services which could help them turn their lives around, the most effective way, and sometimes the only way, to get such children into social services that can help restore their sense of self-dignity is to utiliz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Most victims of child prostitution who enter our criminal justice system are diverted to social service programs without suffering the additional stigma of a penalty or a criminal record. Nonetheless, sadly, that is not always possible. The United States believes that countries

must retain the flexibility to help children by keeping them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r else many of them will be doomed to return to a life of danger and degradation. Accordingly, the United States must reserve our position with respect to this portion of the outcome document.

That said, the Bush Administration recognizes that, unless provided a safe environment in which to live and the necessary skills to re-integrate into society, a sexually-exploited child faces the ever-present risk of being victimized again. It is only through these collective efforts that we can deal with this scourge at all levels - through prevention, protection, and prosecution.

Yes, it is a bold new world, but we remain undaunted by the challenges we face. The United States wants your help; we need your help. We need to close our doors to child pornographers, traffickers, and predators - and to the seen and unseen horrors they present.

We recognize that no child can consent to being exploited - they are victims and need our help. Childhood is a time to be safe, secure, and happy - it is a time for dreams, not nightmares. It is our moral imperative to ensure that children be free from sexual abuse so that they can grow into productive and responsible adults. Let us remain resolute. Together, let us renew our commitment to our children.

Thank you.

2. 회의 결과문서(국·영문)

◎ 요코하마세계공약

(The Yokohama Global Commitment 2001) 97

THE YOKOHAMA GLOBAL COMMITMENT 2001

I. Our Follow-up:

1. We, representatives from government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private sector, and members of civil society from around the world, have gathered together in Yokohama, Japan, at the Second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17-20 December 2001)("The Yokohama Congress"). Five years after the First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s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Stockholm, Sweden in 1996, we have reviewed developments as a follow-up process to strengthen our commitment to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2. We reaffirm, as our primary considerations,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interests and rights of the child to be protected from all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we welcome the following developments, visible in a number of countries, since the First World Congress:
 - the greater emphasis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all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y State Partie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children are able to enjoy their rights;
 - the increasing mobilization of governments, local authorities and non-governmental sector,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o empowe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o safeguard their future;
 - the adoption of multi-faceted, inter-disciplinary measures, includ-

ing policies, laws, programmes, mechanism, resources and dissemin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o ensure that children are able to grow up in safe and dignity;

- enhanced actions against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rafficking in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includ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agendas, strategies or plans of action to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new laws to criminalize this phenomenon, including provisions with extra-territorial effect;
- the promotion of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enforcement of policies, laws and gender-sensitive programmes to prevent and address the phenomenon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cluding information campaigns to raise awareness, better educational access for children, social support measures for families and children to counter poverty, action against criminality and the demand for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prosecutions of those who exploit children;
- the provision of child-sensitive facilities such as telephone help-lines, shelters, and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prevent violations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o provide effective remedies;
- the comprehensive, systematic and sustained involvement of the private sector, such as workers' and employers' organizations, members of the travel and tourism industry, the communications industry, includi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other businesses, in enhancing child protection, including their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corporate policies and Codes of Conduct to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 greater participation by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promoting and protecting their rights, notably through young people's networks and forums and the involvement of young people as peer communicators and counselors;
-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standards to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through new instruments, in-

cluding the following: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2000), and the Convention on Cyber-crime(2001), while noting relevant provisions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1998).

- the entry into for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s Conventions No. 182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mplemented by ILO Recommendation No. 190) on 19 November 2000, an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n 18 January 2002;
- the progress made in the preparations for the forthcoming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Children, including its outcome document;
- the emergence of a broader partnership among and between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gional/sub-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mmunities, and other key actors, and closer linkage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monitoring mechanisms on the issue, especiall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s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der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3. We take into account with appreciation the regional consultations held in Bangkok, Thailand; Rabat, Morocco; Dhaka, Bangladesh; Montevideo, Uruguay; Budapest, Hungary; and Philadelphia, United States of America(see Annex); and various national seminars leading up to the Yokohama Congress, and related activities, including those with young people's participation, and their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enriching the content of

our follow-up action, and we encourage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by governments that have participated in them in partnership with all stakeholders, includ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young people.

4. We recognize that much more needs to be done to protect children globally and express our concerns at the delays in the adoption of needed measures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II. Our Global Commitment

5. We have come together to:

- **reiterate** the importance and the call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y State parties and related instruments, and **underline** our belief in the rights of children to be protected from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in the form of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
- **encourage** early ratification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particular, ILO Convention No. 182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an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reaffirm** our commitment to build a culture of respect for all persons based upon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nd to eliminat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particular by sharing the lessons learnt since the First World Congress, and by improving cooperation in this regards;
- **recommit** to the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of the First World Congress("The Stockholm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and in particular to developing national agendas, strategies

or plans of action, designated focal points and comprehensive gender-disaggregated data collection,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measures, including child-rights based laws and law enforcements;

- **reinforce** our effort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particular by addressing the root causes that put children at risk of exploitation, such as poverty, inequality, discrimination, persecution, violence, armed conflicts, HIV/AIDS, dysfunctional families, the demand factor, criminality, and violations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rough comprehensive measures, including improved educational access for children, especially girls, anti-poverty programmes, social support measures, public awareness-rais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of child victim and action to criminalize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all its form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while not criminalizing or penalizing the child victims;
- **emphasize** that the way forward is to promote closer networking among key actors to comba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t the international, inter-regional, regional/sub-regional, bilateral, national and local levels, in particular, among communities and the judicial, immigration and police authorities, as well as through initiatives interlinking the young people themselves;
- **ensure** adequate resource allocation to counter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to promote education and information to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including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mes on the rights of the child addressed to children, parents, law enforcers, service providers and other key actors;
- **reiterate** that an essential way of sustaining global action is through regional/sub-regional and national agendas, strategies or plans of action that build on regional/sub-regional and national

monitoring mechanisms and through strengthening and reviewing existing international mechanism with monitoring process,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as well as the follow-up of their recommendations, and to identify any reforms that may be required;

- **take** adequate measures to address negative aspects of new technologies, in particular,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while recognizing the potential new technologi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through dissemin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and networking among partners;
- **reaffirm** the importance of the family and **strengthen** social protection of children, young people and families through awareness-raising campaigns and community-based surveillance/monitoring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cooperation at all levels and to combining efforts to eliminate all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of children worldwide;
- **declare** that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must not be tolerated and **pledge** to act accordingly.

Appendix : Explanatory Statements

The following documents were submitted to the Chair at the conclusion of the Second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nex

- Regional Commitment and Action Plan of the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dopted at the 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Consultation for the Second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Bangkok, 16-19 October 2001
- Declaration of the Arab-African Forum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dopted at the Arab-African Forum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Rabat, 24-26 October 2001
- South Asia Strategy, adopted at the South Asia Consultation for the 2nd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Dhaka, 4-6 November 2001
- Commitment to a Strategy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Latin American-Caribbean Region, adopted at the Interamerican Congress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Montevideo 7-9 November 2001
- Commitment and Plan of Action for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in Europe and Central Asia, adopted at the Conference on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held in Budapest, 20-21 November 2001
- Suggestions from North American Regional Consultation on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Philadelphia, 2-3 December 2001
-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adopted at the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Stockholm, 27-31 August 1996

2001 요코하마 세계공약

I. 후속조치(Follow-Up):

1. 우리, 즉 정부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민간부문, 및 전 세계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2차 세계회의(요코하마 회의)”를 위해 2001년 12월 17~20일간 일본의 요코하마에 함께 모였다. 1996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계회의 이후 5년 동안, 우리는 성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전 상황을 검토해왔다
2. 근본적인 관심사로서 우리는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제1차 세계회의 아래로 회원국들에서 보여지는 다음의 진전들을 환영한다:
 -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다 큰 강조와 아동들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동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보다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요구;
 -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며 아동 및 그들의 가족에게 미래를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부, 지방정부 및 비정부 부문의 참여;
 - 아동들이 안전하고 품위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정책, 법, 프로그램, 기구 재원을 포함한 다면적이며 다방면의 조치 채택;
 - 아동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국제적 의제, 전략 및 행동계획을 포함하여 아동 매춘, 아동 포로노그라피 그리고 성적 목적을 위한 아동 인신매매에 맞서는 조치의 강화와 역외효과를 가진 조항을 포함해 이를 현상을 범죄화하는 새로운 법률;
 - 의식고양을 위한 캠페인, 아동들을 위한 보다 나은 교육 기회 제

공, 빈곤에 맞서는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보다 잘 구비된 사회 지원정책, 범죄행위 및 아동의 성착취 요구에 반하는 조치 그리고 아동을 착취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포함한 아동의 성적 착취 현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정책, 법률 및 성인지적 프로그램의 보다 효과적인 이행집행;

- 아동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도움의 전화, 쉼터, 사법·행정적 절차와 같은 아동 인지적인 시설 제공
- 아동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업정책 및 행동규범의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보호증진에 있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산업을 포함하는 노동자, 사용자조직, 여행 및 관광산업회원, 통신산업과 같은 민간부분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참여;
- 청소년 네트워크나 포럼을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이 또래 정보 전달자나 상담자로서 참여;
-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새로운 조치들을 통한 아동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들의 발전: 국제조직 범죄관련 국제연합부속인신(특히 여성과 아동)매매예방, 억제 및 처벌에 관한 의정서(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사이버 범죄 협약(The Convention on Cybercrime(2001)), 국제형사법원의 로마 부속문서(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1998))
- 2000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금지 및 즉각적 조치에 관한 협약 No. 182(ILO 권고사항 No.190의해 보완됨) 및 2002년 1월18일에 시행되는 아동매매·매춘 및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를 시행;

- 다가오는 이동특별 총회의 특별회기를 위한 준비를 통한 진보 및 그에 관한 결과 문서;
- 지방·중앙 정부, 정부간 조직, 비정부조직, 지역/소지역·국제적 조직, 지역사회 및 다른 주요한 기관들간의 협력을 넓히거나, 유엔 기타 본 협안에 대한 감시기구들간의 긴밀한 연계를 넓히는 것으로, 그 감시 기구들은 특히 아동 권리 위원회 및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아동 매매·매춘 및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인권 위원회에 관한 특별 보고관을 포함(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der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3. 우리는 태국 방콕, 모르코 라바트, 방글라데시 다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형가리 부다페스트 및 미합중국 필라델피아(참조)에서 개최된 지역회의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였으며 요코하마회의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국내세미나 및 이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와 우리의 검토 활동의 질을 높이는 청소년들의 결론과 권고사항들을 포함하는 관련 활동을 고려하였다. 또한 우리는 비정부간 조직 및 청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참여한 정부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4.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더 많은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며, 세계의 다양한 부분에서 요구되는 조치들이 제때에 채택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II. 우리의 세계선언

5. 우리는 다음을 위해 모였다.

-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아동권리 협약의 효과적인 시행의 중요성과 요청을 재차 확인하고, 성을 목적으로 한 아동매춘, 포르노 및 인신매매의 형태의 상업적 성착취로부터 보호되어져야 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 관련 국제협약의 조속한 비준 특히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금지 및 즉각적 조치에 관한 국제 노동 기구(ILO)협약 No. 182 및 아동매매 · 매춘 및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의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체결을 비준하기 위해서;
- 비차별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특히 제1세계 회의 개최 이후로 얻어진 교훈을 공유하고 이 점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철폐하기 위해서;
- 제1세계 회의 선언 및 행동의제(“스톡홀름 선언 및 행동의제”) 특히 국가적 차원의 의제, 행동계획, 전략 혹은 담당기관의 선정, 포괄적인 성분리 통계 및 법률과 법률 시행에 근거한 아동 권리의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의 이행 개발을 재 강조하기 위하여;
- 빈곤, 불평등 차별, 박해, 폭력 분쟁 AIDS, 결손가정, 필요한 요소, 범법행위 및 아동 권리의 침해와 같은 착취의 위험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를 광범위한 조치들과 아동, 특히 소녀를 위한 보다 나은 교육기회 제공, 빈곤퇴치프로그램, 사회적부양 정책, 공공의식증진, 신체적 · 심리적 회복 및 아동 피해자들의 사회적 부양 정책, 통합 및 관련 국제 협정들에 따라 모든 형태의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범법화하고 아동 피해자를 범법화 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조치들을 통해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반대하는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 앞으로 국제적, 지역간, 지역/소지역, 양자의, 국내 및 지역 수준에

서의, 특히 공동체 및 사법적, 이민 혹은 정책 당국들 사이와 청소년들 자신을 서로 연결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또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와 투쟁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들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시키는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 아동 상업적 성착취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동, 부모, 법, 집행자들, 서비스 제공자 및 다른 주요 활동가들을 위한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포함하는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및 정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자원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서;
- 지속적인 세계적 조치의 필수적인 방법이 그 기구들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역/소지역, 국가의제, 전략 혹은 지역적 혹은 국내적 감시 기구들에 근거한 조치에 관한 계획들을 통해서나 요구되는 개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시 과정을 거치는 현존하는 구제적 기관들과 그들의 추천사항을 강화하거나 검토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 새로운 기술의 부정적인 면 특히, 인터넷을 통한 아동 포르노의 부정적인 면을 전달하는 반면, 새로운 기술이 정보의 유포 및 교환과 동료들 간의 연계를 통하여 상업적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 가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한 인식 증진 캠페인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감시/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 및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 모든 수준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아동 성착취와 학대를 철폐하려는 노력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 아동 성착취는 묵인되어서는 안되며, 그에 상응하여 행동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부록: 해설서

다음의 문서들은 아동의 상업적에 관한 제2차 세계회의 결론으로서의 의장에게 제출된 문서들이다.

첨부

- 2001년 10월 16~18일에 방콕에서 개최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2차 세계를 위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회의에서 채택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공약 및 행동 계획 (Regional Commitment and Action Plan of the 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dopted at the East Asia the Pacific Regional Consultation for the Second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Bangkok, 16-18 October 2001)
- 2001년 10월 24~26일에 라바트에서 개최된 아동 성착취에 대한 아랍-아프리카 포럼에서 채택된 아동 성착취 반대 아랍-아프리카 포럼 선언 (Declaration of the Arab-African Forum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dopted at the Arab-African Forum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Rabat, 24-26 October 2001)
- 2001년 11월 4~6일에 다카에서 개최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2차 세계회의를 위한 남아시아 협의회에서 채택된 남아시아 전략 (South Asia Strategy, adopted at the South Asia Consultation for the 2nd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Dhaka, 4~6 November 2001)
- 2001년 11월 7~9일에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아동 성착취에 관한 아메리카 회의에서 채택된 라틴 아메리카-캐리비안 지역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및 다른 형태의 성폭력 철폐 전략에 관한 공약

(Commitment to a Strategy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Latin American-Caribbean Region, adopted at the Interamerican Congress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Montevideo, 7~9 November 2001)

- 2001년 11월 20~21일에 걸쳐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성착취에 대한 아동보호회의에서 채택된 유럽·중앙아시아 지역 아동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약 및 행동 계획

(Commitment and Plan of Action for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in Europe and Central Asia, adopted at the Conference on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held in Budapest, 20~21 November 2001)

- 2001년 12월 2~3일에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북미 지역 회의의 제안

(Suggestions from North American Regional Consultation on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Philadelphia, 2~3 December 2001)

- 1996년 8월 27~31일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및 행동 의제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adopted at the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Stockholm, 27~31 August 1996)

3. 회의관련 배경문서(국·영문)

-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계회의 선언문 및 행동의제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1st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113
-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41
- ◎ 아동의 무력충돌에의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 in armed conflict) 201
- ◎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219
- ◎ 국제연합 국제조직 범죄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45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계회의
선언문 및 행동의제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1st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1st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of Children
Stockholm, Sweden, 27-31 August, 1996

Declaration

1. We, gathered in Stockholm for the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representing the Governments of 122 countries, together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End Child Prostitution in Asian Tourism(ECPAT) campaign, UNICEF and other agencies within the family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concerned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orldwide, hereby commit ourselves to a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he Challenge

2. Every day, more and more children around the world are subjected to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Concerted action is needed at the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bring an end to the phenomena.

3. Every child is entitled to full protection from all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This is reaffirmed by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of universal significance(of which there are 187 States Parties). States are required to protect the child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and promote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of the child victim.

4. According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and their rights are to be enjoyed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In all matters affecting the child, the views of the child should be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age and maturity of the child.
5.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a fundamental violation of children's rights. It comprises sexual abuse by the adult and remuneration in cash or kind to the child or a third person or persons. The child is treated as a sexual object and as a commercial objec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onstitutes a form of coercion and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amounts to forced labour and a contemporary form of slavery.
6. Poverty cannot be used as a justification for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even though it contributes to an environment which may lead to such exploitation. A range of other complex contribution factors include economic disparities, inequitable socio-economic structures, dysfunctional families, lack of education, growing consumerism, urban-rural migration, gender discrimination, irresponsible male sexual behaviour,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armed conflicts and trafficking of children. All these factors exacerbate the vulnerability of girls and boys to those who would seek to procure them for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7. Criminals and criminal networks take part in procuring and channeling

vulnerable children toward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and in perpetuating such exploitation. These criminal elements service the demand in the sex market created by customers, mainly men, who seek unlawful sexual gratification with children. Corruption and collusion, absence of and/or inadequate laws, lax law enforcement, and limited sensitization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to the harmful impact on children, are all further factors which lead,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t may involve the acts of a single individual, or be organized on a small scale(e.g. family and acquaintances) or a large scale(e.g. criminal network).

8. A wide range of individuals and groups at all levels of society contribute to the exploitation practice. This includes intermediaries, family members, the business sector, service providers, customers, community leaders and government officials, all of whom may contribute to the exploitation through indifference, ignorance of the harmful consequences suffered by children, or the perpetuation of attitudes and values that view children as economic commodities.
9.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an result in serious, life-long, even life threatening consequences for the physical, psychological, spiritual, and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cluding the threat of early pregnancy, maternal mortality, injury, retarded development, physical disabilities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including HIV/AIDS. Their right to enjoy childhood and to lead a productive, rewarding and dignified life is seriously compromised.
10. While laws, policies and programmes exist to counter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greater political will,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measures, and adequate allocation of resources are needed to give effect to the spirit and letter of these laws, policies and programmes.

11. The primary task of combating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rests with the State and families. The civil society also has an essential role to play in preventing and protecting children from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It is imperative to build a strong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ll sectors of society to counter such exploitation.

The Commitment

12. The world Congress reiterates its commitment to the rights of the child, bearing in mi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calls upon all states in cooperation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to:
 - Accord high priority to action agains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llocate adequate resources for this purpose;
 - Promote stronger cooperation between States and all sectors of society to prevent children from entering the sex trade and to strengthen the role of families in protecting childre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 Criminalize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s well as other form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ondemn and penalize all those offenders involved, whether local or foreign, while ensuring that the child victims of this practice are not

penalized;

- Review and Revise, where appropriate, laws, policies, programmes and practice to eliminate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 Enforce laws, policies and programmes to protect children from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and strengthe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law enforcement authorities;
- Promote adoption, implementation and dissemination of laws, policies, and programmes supported by relevant regional, national and local mechanisms agains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 Develop and Implement comprehensive gender-sensitive plans and programmes to preven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o protect and assist the child victims and to facilitate their recovery and reintegration into society;
- Create a climate through education, social mobilization, and development activities to ensure that parents and others legally responsible for children are to fulfill their righ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o protect children from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 Mobilize political and other partners,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including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assist countries in eliminating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 Enhance the role of popular participation, including that of children, in preventing and eliminating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13. The World Congress adopts this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to assist in protecting child rights, particularly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other relevant instruments, to put an end to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worldwide.

Agenda for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1. The Agenda for Action aims to highlight existing international commitments, to identify priorities for action and to assist in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see Annex I). It calls for action from States, all sectors of society, and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gains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2.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 Local/National levels

- a) urgently strengthen comprehensive, cross-sectional and integrated strategies and measures, so that by the year 2000 there are national agenda(s) for action and indicators of progress, with set goals and time frame for implementation, targeted to reducing the number of children vulnerable to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and nurturing an environment, attitudes and practices to child rights;
- b) urgently develop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mechanism(s) or focal point(s)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in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so that by the year 2000 there are data bases on children vulnerable to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and on their exploiters, with relevant research and special attention to disaggregating data by

their age, gender, ethnicity, indigenous status, circumstances influencing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and respect for confidentiality of the child victims especially in regard to public disclosures;

c) foster close intera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sectors to plan, implement and evaluate measures agains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oupled with campaigns to mobilize families and communities to protect children from commercial sexual and with adequate allocation of resources;

ii) Regional/International Levels

d) promote better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reg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catalysts which have a key role in eliminating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cluding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UNICEF, ILO, UNESCO, UNDP, WHO, UNAIDS, UNHCR, IOM, the World Bank/IMF, INTERPOL,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Division, UNFPA, the World Tourism Organization,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he UN Centre for Human Rights,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its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and the 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each taking guidance from the Agenda for Action in their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mandates;

e) advocate and mobilize support for child rights, and ensure that adequate resources are available to protect children from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and

f) press for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y State Parties, including requirements for reporting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ccordance with existing deadlines, and encourage follow-up of countries' progress towards full realization of child rights in the context of other relevant United Nations organs, bodies and mechanisms, including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its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3. Prevention:

- a) provide children with access to education as a means of improving their status and make primary education compulsory and available free to all;
- b) improve access and provide relevant health services, education, training, recreation and a supportive environment to families and children vulnerable to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including those who are displaced, homeless, refugees, stateless, unregistered, in detention and/or in state institutions;
- c) maximize education on child rights and incorporate, where appropriate,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to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for all communities, families and children;
- d) initiate gender-sensitive communication, media and information campaigns to raise awareness and educate government personnel and other members of the public about children rights and the illegality and harmful impact of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promote responsible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in society, in

keeping with the child's development, sense of dignity and self-esteem;

- e) promote child rights in family education and family development assistance, including an understanding that both parents are equally responsible for their children, with special intervention to prevent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 f) identify or establish peer education programmes and monitoring networks to counter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 g) formulate or strengthen and implement gender-sensitive national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and programmes to assist children vulnerable to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families and communities in resisting acts that lead to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with special attention to family abuse,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and their impact on girls, and to promoting the value of children as human beings rather than commodities; and reduce poverty by promoting gainful employment, income generation and other supports;
- h) develop or strengthen, implement and publicize relevant laws, policies and programmes, to preven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bearing in mi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i) review laws, policies, programmes and practices which lead to or facilitate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pt effective reforms;
- j) mobilize the business sector, including the tourism industry, against the use of its networks and establishments for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 k) encourage media professionals to develop strategies which strengthen the role of the media in providing information of the highest quality, reliability and ethical standards concerning all aspects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 l) target those involved with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with information, education and outreach campaigns and programmes to promote behavioural changes to counter the practice.

4. Protection:

- a) develop or strengthen and implement laws, policies and programmes to protect children and to prohibi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bearing in mind that the different types of perpetrators and ages and circumstances of victims require differing legal and programmatic responses;
- b) develop or strengthen and implement national laws to establish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service providers, customers and intermediaries in child prostitution, child trafficking, child pornography, including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and other unlawful sexual activity;
- c) develop or strengthen and implement national laws, policies and programmes that protect child victims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from being penalized as criminals and ensure that they have full access to child-friendly personnel and support services in all sectors, and particularly in legal, social and health fields;
- d) in the case of sexual tourism, develop or strengthen and implement laws to criminalize the acts of the nationals of the countries of origins

when committed against children in the countries of destination ("extra-territorial criminal laws"); promote extradition and other arrangements to ensure that a person who exploits a child for sexual purposes in another country(the destination country) is prosecuted either in the country of origin or the destination country; strengthen laws and law enforcement, including confiscation and seizure of assets and profits, and other sanctions, against those who commit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in destination countries; and share relevant data;

- e) in the case of trafficking of children, develop and implement national laws, policies and programmes to protect children from being trafficked within or across borders and penalize the traffickers; in cross border situations, treat these children humanely under national immigration laws, and establish readmission agreements to ensure their safe return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accompanied by supportive services; and share relevant data;
- f) identify and strengthen or establish networks betwe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ncluding INTERPOL, and civil society to monitor agains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set up special units among law enforcement personnel, with adequate resources and child-friendly facilities to counter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ppoint liaison officers aimed at guaranteeing child rights in police investigations and judicial procedures for the exchange of key information; and train all law enforcement personnel on child development and child rights,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ther relevant human rights standards and national legislation;

- g) identify and encourage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tworks and coalitions among the civil society to protect children from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foster action and interaction among communities, famili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business sector, including tourist agencies, the World Tourism Organization, employers and trade unions, computer and technology industry, the mass media, professional associations, and service providers to monitor and report cases to the authorities, and to adopt voluntary ethical codes of conduct; and
- h) create safe havens for children escaping from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and protect those who provide assistance to child victims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from intimidation and harassment;

5. Recovery and Reintegration:

- a) adopt a non-punitive approach to child victims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in keeping with the rights of the child, taking particular care that judicial procedures do not aggravate the trauma already experienced by the child and that the response of the system be coupled with legal aid assistance, where appropriate, and provision of judicial remedies to the child victims;
- b) provide social, medical,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other support to child victims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and their familie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ose with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including HIV/AIDS, and with a view to promoting the self-respect, dignity and rights of the child;
- c) undertake gender-sensitive training of medical personnel, teachers,

social worker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others working to help child victims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s on child development and child rights, bearing in mi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other relevant human rights standards;

- d) take effective action to prevent and remove societal stigmatization of child victims and their children; facilitate the recovery and reintegration of child victims in communities and families; and wher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hild is necessary, ensure that it is for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child's best interests;
- e) promote alternative means of livelihood with adequate support services to child victims and their families so as to prevent further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and
- f) adopt not only legal sanctions against the perpetrators of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but also socio-medical and psychological measures to create behavioural changes on the part of the perpetrators.

6. Child Participation:

- a)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the children, including child victims, young people, their families, peers and others who are potential helpers of children so that they are able to express their views and to take action to prevent and protect children from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and to assist child victims to be reintegrated into society; and
- b) identify or establish and support network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s advocates of child rights, and include children, according to their evolving capacity,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government

and other programmes concerning them.

Annex 1

The Agenda for Action refers to many international instruments, recommendations and targets which have bearing o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ey include the following:

- the 1930 *ILO Convention No. 29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 the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the 1949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o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 the 1957 *ILO Convention No. 105 concerning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 the 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the 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the 1973 *ILO Convention No. 138 concerning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 the 1979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the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the 1990 *World Declaration on the Surviv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Children and its Plan of Action*
- the 1992 *Programme of Ac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for the Prevention of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the 1993 *Vienna Declarations and Programme of Action of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 the 1993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 the 1994 *Cairo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of the World Conference on Populations and Development*
- the 1995 *Copenhagen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of the 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
- the 1995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 the 1996 *Programme of Ac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for the Prevent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The Agenda for Action takes note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It acknowledges the initiatives of many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INTERPOL, World Tourism Organization(in particular, the 1995 World Tourism Organization Statement on the Prevention of Organized Sex Tourism) and the Council of Europe(in particular, the 1991 Recommendation No. R91 11 concerning Sexual Exploitation. Pornography and Prostitution of, and Trafficking in, Children and Young Adults). It also recognizes the process of evolving an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계회의 선언문과 행동의제

스웨덴, 스톡홀름, 1996년 8월 27~31

선언문

1.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세계회의를 위해 스톡홀름에 모인 우리, 즉 세계 122개국의 정부대표와 비정부단체들, 아시아아동매춘관광 종식운동(ECPAT), UNICEF를 비롯한 UN의 다른 기관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진 세계의 여러 단체와 전 세계적인 연대를 갖고 개인들은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다.

당면한 문제

2. 성착취와 성학대의 대상이 되고있는 세계 아동의 수는 매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의 협의에 의한 행동이 요구된다.
3. 모든 아동은 어떠한 형태의 성착취나 성학대로 부터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187개 국가가 서명한 국제기준인 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돼 있다. 국가는 아동을 성착취나 성학대로부터 보호해야하고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정신적, 육체적 회복과 사회로의 복귀를 도울 의무가 있다.
4.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에 관한 행동을 취할 때에 주 고려사항은 아동의 최대 이익이어야하고 그 권리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없이 향유되어야 한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동의 입장이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한 상태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5.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는 아동 권리를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그 것은 성인에 의한 성적학대, 아동이나 제 삼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적이거나 비금전적인 대가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아동은 성적 대상이자 상업적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는 아동을 상대로 한 강압이나 폭력, 강요된 노동, 그리고 현대판 노예의 형태가 있다.
6. 빈곤이 성착취 행위의 환경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빈곤이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 그 외의 다양한 이유들로는 경제적 불균형, 불공평한 사회-경제구조, 와해된가족, 교육부족, 소비주의의 팽창, 도시-농촌간 이동, 성차별, 무책임한 남성의 행동, 전통적 악습의 답습, 무력분쟁, 아동의 매매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소년 소녀들이 아동을 상업적 성착취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노출되도록 상황을 악화시킨다.
7. 범죄자와 그 연계망은 취약한 아동이 상업적 성착취에 이용되고 그 행위가 존속되도록 알선하고 유통망을 강화한다. 이러한 범죄 요소들은 주로 남성으로 구성되어, 아동과의 불법적 성충족 행위를 하는 성매매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킨다. 부패, 결탁, 법의 부재, 부적절한 법, 느슨한 법 시행, 그리고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법집행 당사자의 인지부족, 이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와 연관된다. 개인이나 소규모구성(예: 가족이나 아는 사람), 또는 대규모의 조직(예: 범죄망)이 행하는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
8. 사회 각 계층의 많은 개인과 그룹들이 이 착취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 중개업자, 가족구성원, 비즈니스 부문 공급자, 수요자, 지역단체의 장, 정부관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과 피해 아동이 겪는 유해한 결과에 대한 무지, 또는 아동을 경제상품으로 취급하는 태도의 존속 등이 착취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9.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는 육체적, 심리적, 영적,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그 영향이 평생 지속되고 생명에까지 지장을 주는 결과(조기임신, 모성사망, 부상, 발달부진, 육체장애, HIV/AIDS를 포함한 성병의 위협 등)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이 유년기를 즐기고 생산적이며 보람있는 고귀한 삶을 누릴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이다.

10. 현재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정책,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더 강한 정치적 의지와 효율적인 이행조치, 그리고 더 충분한 자원의 분배가 있어야 현존하는 법과 정책,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것이다.

11.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근절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와 가정에 부여되며, 사회도 이 행위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할 필수적인 역할을 갖게 된다. 그리고 착취에 대항하기 위해 정부, 국제조직 그리고 사회 각 분야간의 협조가 강력히 요구된다.

공약

12. 세계 회의는 아동 권리 협약을 염두에 두고 아동의 권리를 위한 공약을 되새기며 모든 나라가 국내/국제적 단체, 시민사회와 협조하여 다음을 지킬 것을 표명한다: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항한 행동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재원을 분배한다;
- 아동이 성 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막고 아동을 상업적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도록 가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간, 사회 각 분야간의 협조를 촉진한다;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나 다른 형태의 성착취 행위를 범죄화하고 관련 범죄자가 내국인이나 외국인인 것을 불문하고 처벌하되 피해 아동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법, 정책, 프로그램 및 관례를 검토, 개정한다;
- 아동을 상업적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법 집행 기관과의 협조와 의사소통을 강화한다;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한 대항에 관련된 지역, 국가, 지역 구조가 지지하는 법, 정책, 계획의 채용, 이행, 보급을 촉진한다;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방지와 피해 아동의 보호·지원, 그리고 피해아동의 회복과 사회로의 복귀를 돋기 위한 포괄적이며 성인지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 부모와 법적으로 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동을 상업적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권리, 의무,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교육, 사회적 동원, 행동의 개발을 통해 조성한다;
- 정치적이거나 다른 동반자, 정부간 조직과 비정부 조직을 포함한 국내/국외의 조직들이 집결하여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근절시키려는 국가에 도움을 준다;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해 아동을 비롯한 다양한 참여자의 역할을 제고한다.

13. 세계 회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전 세계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한 아동권리협약과 관련 조치의 이행을 위해 이 선언문과 행동의제를 채택한다.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근절시키기 위한 행동의제

1. 이 행동의제는 존재하는 현존하는 국제 공약을 강조하고, 행동의 우선 순위를 명시하며 여러 관련된 국제협약(부록I 참조)의 이행을 돋는데 그 목적을 둔다.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각 부문, 국가적, 지역적, 국제기구들의 행동이 필요하다.

2. 조정과 협력:

i) 지방/국가적 차원

- a) 포괄적이고 각 분야에 걸친 통합된 전략과 조치를 긴급히 강화하여 2000년까지 상업적 성착취에 취약한 아동의 수를 줄이고, 아동의 권리에 합당한 환경과 자세, 실천을 목표로 그 행동에 대한 국가적 강령과 진보 지표로서 이행을 위한 목표와 시간을 계획한다;
- b)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지방정부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행, 감시 구조나 전 담당자를 발전시킨다. 그리하여 2000년까지 상업적 성착취에 취약한 아동에 관한 데이터와 착취자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통해 데이터 베이스를 연령, 성별, 민족, 고유한 지위, 상업적 성착취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별로 구분한다. 이 때 피해 아동에 관한 자료는 일급 비밀로 간주,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 c)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처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며,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부와 비정부 기관들 간의 긴밀한 상호 작용과 협력을 촉진한다. 또한 집결된 가정과 지역사회 도움을 받아 아동을 상업적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며 재원을 적절하게 분배한다;

ii) 지역/국제적 차원

- d)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근절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 기구와 촉매 조직들(아동권리위원회, UNICEF, ILO, UNESCO, UNDP, WHO, UNAIDS, UNHCR, IOM, 세계 은행/IMF, 인터폴, UN 범죄 예방과 범죄 정의 실현 부서, UNFPA, 세계 관광기구, UN 인권고등판무관, UN 인권센터, UN 인권위원회, UN 인권 및 아동매매에 관한 특별보고위원회,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실무그룹)이 국가 간, 국제조직간의 더 나은 협력을 이루어 그 기관들이 정해진 위임에 따라 행동을 취할 때 이 행동의제를 지침으로 한다;

- e)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지지를 옹호하고 집결하며, 아동을 상업적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보장한다;
- f) 국가 차원에서 아동 권리협약의 이행을 촉구하며, 이것은 마감 기간을 두고 아동 권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요구 조건을 포함한다. 그리고 UN 인권 및 아동 매매에 관한 특별 보고위원회를 포함해서 관련 UN 기구, 단체, 조직과 연계한 상황하에 아동 인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지속적 노력을 장려한다.

3. 방지:

- a) 아동에게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초등 교육을 의무화하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 b) 추방되거나 가정이 없고, 난민이나 국적이 없거나, 미 등록자이거나 국가 기관에 의해 억류되어 있는 자들을 포함한 상업적 성착취에 취약한 아동과 가정에게 관련 의료서비스, 교육, 훈련, 오락, 부양 환경을 제공하고 이러한 혜택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 c)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극대화하고, 아동권리협약을 지역공동체와 가정, 아동에게 공식, 비공식적으로 교육시킴을 구체화한다;
- d) 정부인사와 다른 공공부문을 상대로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의 위법성 및 악영향을, 교육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며, 아동의 발전과 존엄성, 자아존중을 지키기위해 사회의 책임감있는 성에 대한 자세와 행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의사소통, 미디어, 정보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 e) 부모 모두가 아동 성폭력 방지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동등히 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하여 가정 교육과 가정 발달에서의 아동 권리를 증진시킨다;

- f)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또래 교육 프로그램과 감시 체제를 확인, 또는 설립한다;
- g) 상업적 성착취에 취약한 아동과 가정,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반대하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성인지적국가 사회적, 경제정책과 프로그램을 고안 또는 강화하고 이행한다. 이때, 가정폭력, 악습, 그로 인해 여아가 받는 영향을 특별히 고려하여 아동이 상품이 아닌 인간으로서 존중받도록 추진하며 직업과 수입 창출, 그리고 다른 지원으로 빈곤을 감소시킨다;
- h) 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 정책, 프로그램들을 개발 또는 강화하고 이행, 공공화한다;
- i)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유발하거나 촉진시키는 법, 정책, 프로그램, 관행을 검토하고 효과적으로 시정한다;
- j)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그 유통망이 이용하거나 설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포함한 사업부문을 동원한다;
- k)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모든 면과 관련하여 양질과 높은 신뢰성, 도덕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디어 전문가를 격려한다;
- l)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연관된 사람들을 상대로 정보, 교육, 캠페인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 관행을 타파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한다.

4. 보호

- a) 범행자의 유형, 연령, 피해자의 상황의 차이에 따라 다른 법적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금지시키기 위한 법,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강화하고

이행한다;

- b) 아동 포르노 소지와 다른 불법적 성 행위를 포함한 아동 매춘, 아동매매, 포르노 제작에 관련하여 그 공급자나 수요자, 중개인이 범죄의 책임을 지도록 국가법을 제정, 또는 강화하고 이행한다;
- c)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의한 피해 아동이 범죄자로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들이 아동 친화적인 인원과 모든 구역의 지원시설, 그리고 특히 법, 사회, 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가법,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강화하고 이행한다;
- d) 성관광의 경우 목적지의 아동을 상대로 출발국의 국민에 의해 행해진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개발, 또는 강화하고 이행한다 ("국외범죄법"); 범죄인 본국 송환이나 타국(목적지 국가)에서 아동을 성적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본국이나 그 목적지 국가에서 처벌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다른 조치를 권장한다; 목적지 국가에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자는 재산과 이익의 압류, 제재, 처벌 등을 가하는 법과 그 이행을 강화한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
- e) 아동 매매에 관련하여 국가법,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 이행하여 아동이 국내나 국외에서 매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매매자를 처벌한다; 국경 밖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아동에게 국가 이민법에 근거, 인간적 대우를 제공하고 그들이 지원 서비스를 받아 본국으로 안전하게 송환되도록 재입국 협정를 확립한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
- f)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인터폴과 시민 사회를 포함한 국내, 국제적 법 집행 당국 간 연계망을 확인하고 강화, 또는 설립한다; 충분한 자료와 아동 친화적인 시설을 갖춘 법 집행 자간에 특별부서를 설립하여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응한다; 핵심 정보를 얻기 위한 경찰 조사와 사법 절차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연락담당자를 지명한다; 그리고 모든 법 집행자에게 아동발

전과 권리, 특히 아동권리협약 내용과 다른 관련 인권기준, 국가법에 대해 훈련시킨다;

- g) 아동을 상업적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 국제적 연계망과 시민 사회간의 연대를 확인하고 설립을 촉구한다; 지역 사회, 가정, 비정부기구와 여행사, 세계관광기구, 노동자와 무역연합, 컴퓨터와 기술산업, 대중매체, 전문단체와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사업 부문들이 감시하고 사례를 당국에 보고하며 행위에 자발적인 도덕의 법규를 도입하도록 행동과 상호 작용을 육성한다;
- h) 상업적 성착취로부터 탈출한 아동에게 안전한 안식처를 마련하고 상업적 성착취 피해 아동이 협박과 희롱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5. 회복과 재통합:

- a)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업적 성착취의 피해 아동을 처벌하지 않는 방향을 도입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이미 경험한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으며 대응 기구의 행동이 적절한 법률조력 서비스와 함께 이루어지고 피해 아동에게 사법적 치유를 제공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 b) HIV/AIDS와 같은 성질병의 문제와 아동의 자아존중, 존엄성, 권리의 향상에 특별히 배려하여 상업적 성착취의 피해 아동과 그 가정에 사회, 의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 c) 아동권리협약과 다른 인권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의료계 종사자, 교육자, 사회 사업가, 비정부 단체, 그리고 많은 상업적 성착취 피해 아동을 돋는 사람들을 상대로 아동 발달과 권리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을 실시한다;
- d) 피해 아동과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행동을 취한다; 피해 아동의 회복과 사회 공동체와 가정으로의 재통합을 돋는다; 그리고 아동의 시설 수용이 불가피할 경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수용기간은 최단기간이 되도록 한다;

- e) 피해 아동과 가정에 적절한 자원서비스를 동반한 대안적 생계 수단을 추진한다;
- f) 아동을 상대로 한 성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범죄자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회-의료적, 심리적 방안을 채택 한다.

6. 아동의 참여:

- a) 피해자를 포함한 아동, 청소년, 그들의 가정, 또래, 그리고 아동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방지하고 그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며, 피해 아동이 사회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b) 아동과 청소년 연계망을 아동권리 옹호로써 인정, 또는 설립하고 지원하며 정부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이행에 있어 아동의 발전하는 능력에 따라 아동을 포함한다.

부록 I

이 행동의제는 여러 국제기관, 아동과 가정을 상대로 설정한 목표와 권장사항들을 참조하며, 아래의 사항들이 이에 포함된다:

- 1930년 강요 혹은 강제 노동에 관한 ILO 협약 No. 29
-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 1949년 인신 매매와 매춘 착취 억제를 위한 협약
- 1957년 강요된 노동 철폐에 관한 ILO 협약 No. 105
- 1966년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1966년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1973년 고용 쇠소 연령에 관한 ILO 협약 No. 138
-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협약
- 1989년 아동권리협약
- 1990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에 관한 세계선언과 행동계획
- 1992년 아동의 매매, 매춘, 포르노 방지를 위한 UN 인권 위원회의 행동 프로그램
- 1993년 세계 인권회의 비엔나 선언과 행동프로그램
- 1993년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을 위한 UN 선언
- 1994년 인구와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 카이로선언과 행동계획
- 1995년 사회개발 정상회의 코펜하겐선언과 행동계획
- 1995년 제4차 세계 여성회의 북경 선언과 행동계획
- 1996년 인신매매, 매춘 · 착취 방지를 위한 UN 인권 위원회 행동프로그램

이 행동의제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아동매매관련 특별 보고관을 인식하고, 인터폴, 세계관광기구(특별히 1995년의 조직적인 성관광 방지를 위한 세계관광 기구성명), 유럽의회(그 중에서도 1991년 권고사항아

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포르노, 매춘, 인신 매매에 관한 No. R91 11.)등의 여러 국제, 지역 기관의 주도권을 인정한다. 또한, 아동 매매와 매춘, 포르노에 대한 선택의정서를 전개하는 과정을 승인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as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4/25 of 20 November 1989. It entered into force 2 September 1990,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Preambl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Bearing in mind that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Recognizing that the United Nations has,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proclaimed and agreed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therei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Recalling tha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has proclaimed that childhood is entitled to special care and assistance,

Convinced that the family, as the fundamental group of societ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for the growth and well-being of all its members and particularly children, should be afforded the necessary protection and assistance so that it can fully assume its responsibilities within the community,

Recognizing that the child, for the full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his or her personality, should grow up in a family environment, in an atmosphere of happiness, love and understanding,

Considering that the child should be fully prepared to live an individual life in society and brought up in the spirit of the ideal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n particular in the spirit of peace, dignity, tolerance, freedom, equality and solidarity,

Bearing in mind that the need to extend particular care to the child has been stated in the 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of 1924 and in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0 November 1959 and recogniz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particular in articles 23 and 24),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particular in article 10) and in the statutes and relevant instruments of specialized agenc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e welfare of children,'

Bearing in mind that, as indicated in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hild, by reason of his physical and mental immaturity, needs special safeguards and care, including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before as well as after birth",

Recalling the provisions of the Declaration on Social and Leg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Foster Placement and Adop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 and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Emergency and Armed Conflict,

Recognizing that, in all countries in the world, there are children living in exceptionally difficult conditions and that such children need special consideration,

Taking due account of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s and cultural values of each people for the protection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chil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in every country, in particular in the developing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child means every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eighteen years unless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 child, majority is attained earlier.

Article 2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and ensure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to each child within their jurisdiction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irrespective of the child's or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property, disability,

birth or other statu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child is protected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or punishment on the basis of the status, activities, expressed opinions, or beliefs of the child's parents, legal guardians, or family members.

Article 3

1.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hether undertaken by public or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ourts of law,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legislative bodi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2. States Parties undertake to ensure the child such protection and care as is necessary for his or her well-being, taking into account the rights and duties of his or her parents, legal guardians, or other individuals legally responsible for him or her, and, to this end,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3.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institutions, services and facilities responsible for the care or protection of children shall conform with the standards established by competent authoritie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safety, health, in the number and suitability of their staff, as well as competent supervision.

Article 4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With regard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such measures to the maximum extent of their available resources and, where need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rticle 5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esponsibilities, rights and duties of parents or, where applicable, the members of the extended family or community as provided for by local custom, legal guardians or other persons legally responsible for the child, to provid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appropriate direction and guidance in the exercise by the child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6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every child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Article 7

1.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and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this field, in particular where the child would otherwise be stateless.

Article 8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to preserve his or her identity, including nationality, name and family relations as recognized by law without unlawful interference.
2. Where a child is illegally deprived of some or all of the elements of his or her identity, States Parties shall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and protection, with a view to re-establishing speedily his or her identity.

Article 9

1.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 child shall not be separated from his or her parents against their will, except when competent authorities subject to judicial review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that such separation is necessary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uch determination may be necessary in a particular case such as one involving abuse or neglect of the child by the parents, or one where the parents are living separately and a decision must be made as to the child's place of residence.
2. In any proceedings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all interested parties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and make their views known.
3.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who is separated from one or both parents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except if it is contrary to the child's best interests. 4. Where such separation results from any action initiated by a State Party, such as the detention, imprisonment, exile, deportation or death (including death arising from any cause while the person is in the custody of the State) of one or both parents or of the child, that State Party shall, upon request, provide the parents, the child or, if appropriate, another member of the family with the ess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whereabouts of the absent member(s) of the family unless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would be detrimental to the well-being of the child. States Parties shall further ensure that the submission of such a request shall of itself entail no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person(s) concerned.

Article 10

1.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paragraph 1, applications by a child or his or her parents to enter or leave a State Party for the purpose of family reunification shall be dealt with by States Parties in a positive, humane and expeditious manner. States Parties shall further ensure that the submission of such a request shall entail no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applicants and for the members of their family.
2. A child whose parents reside in different States shall have the right to maintain on a regular basis,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s with both parents. Towards that end and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paragraph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and his or her parents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their own and to enter their own country.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restric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to protect the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dre public),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are consistent with the other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11

1. States Parties shall take measures to combat the illicit transfer and non-return of children abroad.
2. To this end,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conclusion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accession to existing agreements.

Article 12

1. States Parties shall assure to the child who is capable of forming his or her own views the right 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 child, the views of the child being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age and maturity of the child.

2. For this purpose, the child shall in particular be provided the opportunity to be heard in any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ffecting the child, either directly, or through a representative or an appropriate bod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cedural rules of national law.

Article 13

1. The child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the child's choice.
2. The exercise of this right may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but these shall only be such as are provided by law and are necessary:
 - (a) For respect of the rights or reputations of others; or
 - (b)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of public health or morals.

Article 14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2.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arents and, when applicable, legal guardians, to provide direction to the child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righ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3. Freedom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s may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rticle 15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s of the child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2.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other than those impo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dre public),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rticle 16

1. No child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his or her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nor to unlawful attacks on his or her honour and reputation.
2. The child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Article 17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t function performed by the mass media and shall ensure that the child has access to information and material from a diversit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urces, especially those aimed at the promotion of his or her social, spiritual and moral well-being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To this end, States Parties shall:

- (a) Encourage the mass media to disseminate information and material of social and cultural benefit to the child and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article 29;
- (b)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roduction, exchange and dissemination of such information and material from a

diversity of cultur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urces;

- (c) Encourage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children's books;
- (d) Encourage the mass media to have particular regard to the linguistic needs of the child who belongs to a minority group or who is indigenous;
- (e)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the child from information and material injurious to his or her well-being, bearing in mind the provisions of articles 13 and 18.

Article 18

- 1. States Parties shall use their best efforts to ensure recognition of the principle that both parents have common responsibilities for the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Parents or, as the case may be, legal guardian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will be their basic concern.
- 2.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and promoting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States Parties shall render appropriate assistance to parents and legal guardian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and shall ensure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s, facilities and services for the care of children.
-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children of working parents have the right to benefit from child-care services and facilities for which they are eligible.

Article 19

-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child from all forms of physical or mental violence, injury or abuse, neglect or negligent

treatment, maltreatment or exploitation, including sexual abuse, while in the care of parent(s), legal guardian(s) or any other person who has the care of the child.

2. Such protective measures should, as appropriate, include effective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al programmes to provide necessary support for the child and for those who have the care of the child, as well as for other forms of prevention and for identification, reporting, referral, investigation, treatment and follow-up of instances of child maltreatment described heretofore, and, as appropriate, for judicial involvement.

Article 20

1. A child temporarily or permanently deprived of his or her family environment, or in whose own best interests cannot be allowed to remain in that environment, shall be entitled to special protection and assistance provided by the State.
2. States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s ensure alternative care for such a child.
3. Such care could include, inter alia, foster placement, kafalah of Islamic law, adoption or if necessary placement in suitable institutions for the care of children. When considering solutions, due regard shall be paid to the desirability of continuity in a child's upbringing and to the child's ethnic, religious, cultural and linguistic background.

Article 21

States Parties that recognize and/or permit the system of adoption shall ensure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and they shall:

- (a) Ensure that the adoption of a child is authorized only by com-

petent authorities who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and on the basis of all pertinent and reliable information, that the adoption is permissible in view of the child's status concerning parents, relatives and legal guardians and that, if required, the persons concerned have given their informed consent to the adoption on the basis of such counselling as may be necessary;

- (b) Recognize that inter-country adoption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means of child's care, if the child cannot be placed in a foster or an adoptive family or cannot in any suitable manner be cared for in the child's country of origin; (c) Ensure that the child concerned by inter-country adoption enjoys safeguards and standards equivalent to those existing in the case of national adoption;
- (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in inter-country adoption, the placement does not result in improper financial gain for those involved in it;
- (e) Promote, where appropriate,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article by concluding bilateral or multilateral arrangements or agreements and endeavour, within this framework, to ensure that the placement of the child in another country is carried out by competent authorities or organs.

Article 22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a child who is seeking refugee status or who is considered a refuge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or domestic law and procedures shall, whether unaccompanied or accompanied by his or her parents or by any other person, receive appropriate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enjoyment of applicabl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and in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 humanitarian instruments to which the said States are Parties.

2. For this purpose, States Parties shall provide, as they consider appropriate, co-operation in any efforts by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competen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operating with the United Nations to protect and assist such a child and to trace the parents or other members of the family of any refugee child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necessary for reunification with his or her family. In cases where no parents or other members of the family can be found, the child shall be accorded the same protection as any other child permanently or temporarily deprived of his or her family environment for any reason, a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23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a mentally or physically disabled child should enjoy a full and decent life, in conditions which ensure dignity, promote self-reliance and facilitate the child'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2.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disabled child to special care and shall encourage and ensure the extension, subject to available resources, to the eligible child and those responsible for his or her care, of assistance for which application is made and which is appropriate to the child's condition an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parents or others caring for the child. 3. Recognizing the special needs of a disabled child, assistance extend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whenever possible, taking into account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parents or others caring for the child and shall be designed to ensure that the disabled child has effective access to and receives education, training, health care services, rehabilitation services, preparation for employment and recreation opportunities in a manner conducive to the child's achieving the fullest possible social integration and individual development, including his or her cultural and spiritual development

4.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in the spiri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exchange of appropriate information in the field of preventive health care and of medical, psychological and functional treatment of disabled children, including dissemination of and access to information concerning methods of rehabilitation, education and vocational services, with the aim of enabling States Parties to improve their capabilities and skills and to widen their experience in these areas.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24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nd to facilities for the treatment of illness and rehabilitation of health. States Parties shall strive to ensure that no child is deprived of his or her right of access to such health care services.
2. States Parties shall pursue full implementation of this right and, in particular,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 (a) To diminish infant and child mortality;
 - (b) To ensure the provision of necessary medical assistance and health care to all children with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primary health care;
 - (c) To combat disease and malnutrition, including within the framework of primary health care, through, inter alia, the application of readily available technology and through the provision of adequate nutritious foods and clean drinking-wa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angers and risk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d) To ensure appropriate pre-natal and post-natal health care for mothers;
 - (e) To ensure that all segments of society, in particular parents and

children, are informed, have access to education and are supported in the use of basic knowledge of child health and nutrition, the advantages of breastfeeding, hygiene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accidents;

- (f) To develop preventive health care, guidance for parents and family planning education and services.
-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with a view to abolishing traditional practices prejudicial to the health of children.
- 4. States Parties undertake to promote and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 recognized in the present article.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25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a child who has been plac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care, protection or treatment of his or her physical or mental health, to a periodic review of the treatment provided to the child and all other circumstances relevant to his or her placement.

Article 26

- 1. States Parties shall recognize for every child the right to benefit from social security, including social insurance and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 2. The benefits should, where appropriate, be granted, taking into account the resources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child and persons having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the child, as well as any other

consideration relevant to an application for benefits made by or on behalf of the child.

Article 27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every child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child's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and social development.
2. The parent(s) or others responsible for the child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secure, within their abilities and financial capacities, the conditions of living necessary for the child's development.
3. States Parti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onditions and within their mean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ssist parents and others responsible for the child to implement this right and shall in case of need provide material assistance and support programm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nutrition, clothing and housing.
4.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secure the recovery of maintenance for the child from the parents or other persons having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both within the State Party and from abroad. In particular, where the person having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lives in a Sta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child,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accession to international agreements or the conclusion of such agreements, as well as the making of other appropriate arrangements.

Article 28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education and with a view to achieving this right progressively and on the basis of equal opportunity, they shall, in particular:

- (a) Make primary education compulsory and available free to all;
- (b)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different forms of secondary education, including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 make them available and accessible to every child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and offering financial assistance in case of need;
- (c) Make higher education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every appropriate means;
- (d) Make educational and vocational information and guidance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children;
- (e) Take measures to encourage regular attendance at schools and the reduction of drop-out rate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school discipline is administer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hild's human dignity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esent Convention.

3.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and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atters relating to education,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elimination of ignorance and illiteracy throughout the world and facilitating access to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and modern teaching methods.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29

1. States Parties agree that the education of the child shall be directed to:

- (a) The development of the child's personality, talents and mental and physical abilities to their fullest potential;
- (b) The development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for the principles enshr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c) The development of respect for the child's parents, his or her own cultural identity, language and values, for the national value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child is living, the country from which he or she may originate, and for civilizations different from his or her own;
- (d) The preparation of the child for responsible life in a free society, in the spirit of understanding, peace, tolerance, equality of sexes, and friendship among all peoples, ethnic, national and religious groups and persons of indigenous origin;
- (e) The development of respect for the natural environment.

2. No part of the present article or article 28 shall be construed so as to interfere with the liberty of individuals and bodies to establish and direct educational institutions, subject always to the observance of the principle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and to the requirements that the education given in such institutions shall conform to such minimum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by the State.

Article 30

In those States in which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ies or persons of indigenous origin exist, a child belonging to such a minority or who is indigenous shall not be denied the right, in community with other members of his or her group, to enjoy his or her own culture, to profess and practise his or her own religion, or to use his or her own language.

Article 31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and leisure, to engage in play and recreational activities appropriate to the age of the

child and to participate freely in cultural life and the arts.

2.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and promote the right of the child to participate fully in cultural and artistic life and shall encourage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and equal opportunities for cultural, artistic, recreational and leisure activity.

Article 32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protected from economic exploitation and from performing any work that is likely to be hazardous or to interfere with the child's education, or to be harmful to the child's health or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or social development.
2. States Parties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article. To this end and having regard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 (a) Provide for a minimum age or minimum ages for admission to employment;
 - (b) Provide for appropriate regulation of the hour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 (c) Provide for appropriate penalties or other sanctions to ensur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present article.

Article 3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from the illicit use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as defined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and to prevent the use of children in the illicit production and trafficking of such substances.

Article 34

States Parties undertake to protect the child from all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For these purpose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sures to prevent:

- (a) The inducement or coercion of a child to engage in any unlawful sexual activity;
- (b) The exploitative use of children in prostitution or other unlawful sexual practices;
- (c) The exploitative use of children in pornographic performances and materials.

Article 35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sures to prevent the abduction of, the sale of or traffic in children for any purpose or in any form.

Article 36

States Parties shall protect the child against all other forms of exploitation prejudicial to any aspects of the child's welfare.

Article 37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 (a) No child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Neither capital punishment nor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shall be imposed for offences committed by persons below eighteen years of age;
- (b) No child shall be deprived of his or her liberty unlawfully or arbitrarily. The arrest, detention or imprisonment of a child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shall be used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the shortest appropriate period of time;

- (c) Every child deprived of liberty shall be treated with humanity and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and in a manner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needs of persons of his or her age. In particular, every child deprived of liberty shall be separated from adults unless it is considered in the child's best interest not to do so and shall have the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his or her family through correspondence and visits,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 (d) Every child deprived of his or her liberty shall have the right to prompt access to legal and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as well as the right to challenge the legality of the deprivation of his or her liberty before a court or ot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and to a prompt decision on any such action.

Article 38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and to ensure respect for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cable to them in armed conflicts which are relevant to the child.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do not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3. States Parties shall refrain from recruiting any person who has not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into their armed forces. In recruiting among those persons who have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but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eighteen years,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give priority to those who are oldest.
4. In accordance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protect the civilian population in armed conflicts,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protection and care of

children who are affected by an armed conflict.

Article 39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of a child victim of: any form of neglect, exploitation, or abuse; torture or any other form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r armed conflicts. Such recovery and reintegration shall take place in an environment which fosters the health, self-respect and dignity of the child.

Article 40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every child alleged as,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to be trea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motion of the child's sense of dignity and worth, which reinforces the child's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others and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child's age and the desirability of promoting the child's reintegration and the child's assuming a constructive role in society.
2. To this end and having regard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ensure that:
 - (a) No child shall be alleged as, be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by reason of acts or omissions that were not prohibited by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ey were committed;
 - (b) Every child alleged as or accused of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has at least the following guarantees:
 - (i)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according to law;
 - (ii) To be informed promptly and directly of the charges against him or her, and, if appropriate, through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and to have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in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his or her defence;

- (iii) To have the matter determined without delay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in a fair hearing according to law, in the presence of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and, unless it is considered not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n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his or her age or situation,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 (iv) Not to be compelled to give testimony or to confess guilt; to examine or have examined adverse witnesses and to obtain the participation and examination of witnesses on his or her behalf under conditions of equality;
- (v) If considered to have infringed the penal law, to have this decision and any measures imposed in consequence thereof reviewed by a hig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according to law;
- (vi) To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f the child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 (vii) To have his or her privacy fully respected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3. States Parties shall seek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laws, procedures,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specifically applicable to children alleged as,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and, in particular:
 - (a) The establishment of a minimum age below which children shall be presumed not to have the capacity to infringe the penal law;
 - (b) Whenever appropriate and desirable, measures for dealing with such children without resorting to judicial proceedings, providing

that human rights and legal safeguards are fully respected.

4. A variety of dispositions, such as care, guidance and supervision orders; counselling; probation; foster care;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mes and other alternatives to institutional care shall be available to ensure that children are dealt with in a manner appropriate to their well-being and proportionate both to their circumstances and the offence.

Article 41

Nothing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ffect any provisions which are mor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which may be contained in:

- (a) The law of a State party; or
- (b) International law in force for that State.

Part II

Article 42

States Parties undertake to make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dely known, by appropriate and active means, to adults and children alike.

Article 43

1.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progress made by States Parties in achieving the realization of the obligations undertaken in the present Convention,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shall carry out the functions hereinafter provided.
2.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en experts of high moral standing and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covered by this Convention.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tates Parties from among their nationals and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as well as to the principal legal systems.

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nominated by States Parties. Each State Party may nominate one person from among its own nationals.
4. The initial election to the Committee shall be held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thereafter every second year. At least four months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letter to States Parties inviting them to submit their nominations within two months. The Secretary-General shall subsequently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persons thus nominated, indicating States Parties which have nominated them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5. The elections shall be held at meetings of States Parties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At those meetings, for which two thirds of States Parties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those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6.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They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if renominated. The term of five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the names of these fiv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man of the meeting.

7. If a member of the Committee dies or resigns or declares that for any other cause he or she can no longer perform the duties of the Committee, the State Party which nominated the member shall appoint another expert from among its nationals to serve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Committee.
8.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9.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officers for a period of two years.
10.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be held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or at any other convenient place as determined by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meet annually. The duration of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and reviewed, if necessary, by a meeting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1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taff and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12.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ceive emoluments from United Nations resources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Assembly may decide.

Article 44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submit to the Committee,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reports on the measures they have adopted which give effect to the rights recognized herein and on the progress made on the enjoyment of those rights:

- (a) Within two year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 (b) Thereafter every five years.

2. Reports made under the present article shall indicate factors and difficulties, if any, affecting the degree of fulfilment of the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Reports shall also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provide the Committee wit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country concerned.
3. A State Party which has submitted a comprehensive initial report to the Committee need not, in its subsequent reports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b) of the present article, repeat basic information previously provided.
4. The Committee may request from States Parties fur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5. The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throug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very two years, reports on its activities.
6. States Parties shall make their reports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in their own countries.

Article 45

In order to foste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o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covered by the Convention:

- (a)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United Nations organs shall be entitled to be represented at the consider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mandate. The Committee may invite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competent bodies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provide expert advi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re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mandates. The Committee may invite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United Nations organs to submit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re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 (b) The Committee shall transmit,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competent bodies, any reports from States Parties that contain a request, or indicate a need, for technical advice or assistance, along with the Committee's observations and suggestions, if any, on these requests or indications;
- (c) The Committee may recommend to the General Assembly to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to undertake on its behalf studies on specific issues relating to the rights of the child;
- (d) The Committee may make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based on information received pursuant to articles 44 and 45 of the present Convention. Such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shall be transmitted to any State Party concerned and reported to the General Assembly, together with comments, if any, from States Parties.

Part III

Article 46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Article 47

The present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8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main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The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9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or acceding to the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eposit by such State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50

1. Any State Party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the proposed amendment to States Parties, with a request that they indicate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mmunication,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2.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when it has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States Parties.
3. When an amendment enters into force, it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it,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any earlier amendments which they have accepted.

Article 51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receive and circulate to all States the text of reservations made by States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A reservation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be permitted.
3. Reservations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at effect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n inform all States. Such notific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n which it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52

A State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Convention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5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s designated as the depositary of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54

The original of the present Convention,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witness t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Conventio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³⁾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현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3)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 기탁
1991년 12월 20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1072호)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현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 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 1 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 2 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을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4 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 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7 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

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 8 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여야 한다.

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10 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 11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 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 13 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 14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 15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 16 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7 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 · 정신적 ·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나. 다양한 문화적 ·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 · 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 18 조

-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

-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 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 행정적 ·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 20 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 21 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나.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 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2 조

-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 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 23 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을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 24 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

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 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 25 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

과 관련된 그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 2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 27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 지적 · 정신적 ·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 28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을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 29 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30 조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 32 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쳐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 33 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4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 35 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6 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37 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8 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9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0 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

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의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 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 (2) 피의 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3)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가능 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가. 당사국의 법
-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 2 부

제 42 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 43 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6월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이전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

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 44 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가.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이내
 -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 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5 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가.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밖의 권

한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3 부

제 46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47 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 48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 49 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50 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이내에 당사국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 51 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 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 52 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제 53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 54 조

아랍어 · 중국어 · 영어 · 불어 ·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 아동의 무력충돌에의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 in armed conflict)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Encouraged by the overwhelming support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¹ demonstrating the widespread commitment that exists to strive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Reaffirming that the rights of children require special protection, and calling for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without distinction, as well as for their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conditions of peace and security,

Disturbed by the harmful and widespread impact of armed conflict on children and the long-term consequences it has for durable peace, security and development,

Condemning the targeting of children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and direct attacks on objects protected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places that generally have a significant presence of children, such as schools and hospitals,

Noting the adoption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particular, the inclusion therein as a war crime, of conscripting or enlist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years or using them to participate actively in hostilities in both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Considering therefore that to strengthen further the implementation of

rights recogniz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involvement in armed conflict,

Noting that article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pecifies that, for the purposes of that Convention, a child means every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18 years unless,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 child, majority is attained earlier,

Convinced that a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that raises the age of possible recruitment of persons into armed forces and their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will contribute effectively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e to be a primary consideration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Noting that the twenty-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in December 1995 recommended, *inter alia*, that parties to conflict take every feasible step to ensure that children below the age of 18 years do not take part in hostilities,

Welcoming the unanimous adoption, in June 1999,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No. 182 on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which prohibits, *inter alia*, forced or compulsory recruitment of children for use in armed conflict,

Condemning with the gravest concern the recruitment, training and use within and across national borders of children in hostilities by armed groups distinct from the armed forces of a State, and recognizing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ho recruit, train and use children in this regard,

Recalling the obligation of each party to an armed conflict to abide by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tressing that the present Protocol is without prejudice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conta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Article 51, and relevant norms of humanitarian law,

Bearing in mind that conditions of peace and security based on full respect of the purposes and principles contained in the Charter and observance of applicable human rights instruments are indispensable for the full protection of children, in particular during armed conflicts and foreign occupation,

Recognizing the special needs of those children who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recruitment or use in hostilities contrary to the present Protocol owing to their economic or social status or gender,

Mindful of the necessity of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root causes of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s,

Convinced of the nee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as well as the physical and psychosocial rehabilit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children who are victims of armed conflict,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and, in particular, children and child victims in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m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members of their armed forces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do not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Article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persons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are not compulsorily recruited into their armed forces.

Article 3

1. States Parties shall raise in years the minimum age for the voluntary recruitment of persons into their national armed forces from that set out in article 38,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¹ taking account of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at article and recognizing that under the Convention persons under the age of 18 years are entitled to special protection.
2. Each State Party shall deposit a binding declaration upon ratification of or accession to the present Protocol that sets forth the minimum age at which it will permit voluntary recruitment into its national armed forces and a description of the safeguards it has adopted to ensure that such recruitment is not forced or coerced.
3. States Parties that permit voluntary recruitment into their national armed forces under the age of 18 years shall maintain safeguards to ensure, as a minimum, that:
 - (a) Such recruitment is genuinely voluntary;
 - (b) Such recruitment is carried out with the informed consent of the person's parents or legal guardians;
 - (c) Such persons are fully informed of the duties involved in such military service;
 - (d) Such persons provide reliable proof of age prior to acceptance into national military service.

4. Each State Party may strengthen its declaratio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at effect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inform all States Parties. Such notific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n which it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5. The requirement to raise the age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does not apply to schools operated by or under the control of the armed forces of the States Parties, in keeping with articles 28 and 29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4

1. Armed groups that are distinct from the armed forces of a State should not, under any circumstances, recruit or use in hostilities persons under the age of 18 year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prevent such recruitment and use, including the adoption of legal measures necessary to prohibit and criminalize such practices.
3.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legal status of any party to an armed conflict.

Article 5

Nothing in the present Protocol shall be construed as precluding provisions in the law of a State Party or in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at are mor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6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all necessary legal,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within its jurisdiction.

2. States Parties undertake to make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widely known and promoted by appropriate means, to adults and children alike.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ithin their jurisdictio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contrary to the present Protocol are demobilized or otherwise released from service. States Parties shall, when necessary, accord to such persons all appropriate assistance for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their social reintegration.

Article 7

1.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including in the prevention of any activity contrary thereto and in the rehabilit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persons who are victims of acts contrary thereto, including through technical cooperation and financial assistance. Such assistance and cooperation will be undertaken in consultation with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and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 States Parties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provide such assistance through existing multilateral, bilateral or other programmes or, inter alia, through a voluntary fund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8

1. Each State Party shall, within two years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Protocol for that State Party, submit a report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 measures it has taken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 including the measures taken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n participation and recruitment.

2. Following the submission of the comprehensive report, each State Party shall include in the reports it submits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any further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Other States Parties to the Protocol shall submit a report every five years.
3.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may request from States Parties fur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9

1. The present Protocol is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that is a party to the Convention or has signed it.
2. The present Protocol is subject to ratification and is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The Secretary-General, in his capacity as depositary of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ol, shall inform all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all States that have signed the Convention of each instrument of declaration pursuant to article 3.

Article 10

1. The present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the present Protocol or acceding to it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e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e month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11

1. Any State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Protocol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reafter inform the other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all States that have signed the Convention.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If, however, on the expiry of that year the denouncing State Party is engaged in armed conflict, the denunciation shall not take effect before the end of the armed conflict.
2. Such a denunciation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releasing the State Party from it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Protocol in regard to any act that occurs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Nor shall such a denunciation prejudice in any way the continued consideration of any matter that is already under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Article 12

1. Any State Party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the proposed amendment to States Parties with a request that they indicate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mmunication,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2.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when it has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States Parties.
3. When an amendment enters into force, it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that have accepted it,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and any earlier amendments they have accepted.

Article 13

1. The present Protocol,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Protocol to all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all States that have signed the Convention.

아동의 무력충돌에의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4)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노력을 위한 광범위한 공약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임에 고무되고,

아동의 권리는 특별한 보호가 요구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아동들이 처해있는 상황의 지속적이고 차별없는 개선과 평화롭고 안정된 여건하에서의 아동의 계발과 교육을 촉구하고,

무력충돌이 아동에게 미치는 유해하고 광범위한 영향과 그것이 지속적인 평화, 안정, 그리고 발전에 미치는 장기적 결과들을 우려하며,

무력충돌 상황에서 아동을 공격대상으로 삼는 행위와 학교 및 병원과 같이 일반적으로 아동이 밀집해 있는 장소 등 국제법상으로 보호되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비난하고,

국제형사법원 규정의 채택과, 특히 이 규정이 15세 미만의 아동을 징집하거나 그들을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시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행위를 전쟁범죄에 포함시켰음에 주목하고,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력충돌에의 개입으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며,

4) 2000. 5. 25 유엔채택
2000. 9. 6 우리나라 가입 · 서명

아동권리협약 제1조가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란 동 아동에게 적용가능한 법에 의하여 성년기가 그 보다 더 일찍 도래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인간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무력충돌에의 징집연령 및 적대행위에의 참여가능 연령을 높이는 선택의정서가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에 있어서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이행에 효과적으로 공헌할 것임을 확신하며,

1995년 12월의 제26차 적십자연맹 국제회의가 무력충돌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18세 미만의 아동이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음에 주목하고,

무력충돌에 사용하기 위한 아동의 강제 또는 무력징집 등 가혹한 유형의 아동노동의 금지와 철폐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가 1999년 6월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에 의해 아동이 징집되어 훈련받고 국경내 외에서의 적대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최고의 심각한 우려를 갖고 비난하며, 상기와 같이 아동들을 징집, 훈련, 이용하는 자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무력충돌의 모든 당사자들은 국제인도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며,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헌장 제51조 등 현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관련 국제인도법 규범을 저해하지 아니함을 강조하며,

국제연합헌장의 목적 및 원칙의 완전한 존중과 적용가능한 인권규범의 준수에 기초한 평화와 안정이 아동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특히 무력

충돌 및 외국군에 의한 점령시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에 유념하며,

경제적 혹은 사회적 지위나 성별 때문에 특히 이 의정서에 반하는 적대 행위에 징집되거나 이용당하기 쉬운 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무력충돌에 아동들이 개입되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근본 원인들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유념하며,

이 의정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무력 충돌의 희생자인 아동들의 신체적, 심리적 재활과 사회로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지역사회, 특히 아동과 무력충돌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정보,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에 참여할 것을 장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당사국은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국군대의 구성원이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제 2 조

당사국은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의무적으로 군대에 징집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3 조

1. 당사국은 아동권리협약 제38조에 명시된 원칙을 고려하고 협약상 18

세 미만의 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아동권리협약 제38조 제3항에 명시된 자국 군대에 자발적으로 입대 가능한 최소연령을 상향조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대한 비준 또는 가입시 군대에 자발적 입대가 허용되는 최저연령을 명시한 구속력 있는 선언과, 그러한 징집이 강제적·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채택한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을 기탁한다.
3.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군대에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가. 입대가 순전히 자발적일 것
 - 나. 입대가 18세 미만 아동의 부모나 법적 후견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
 - 다. 군복무와 관련된 군무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았을 것
 - 라. 군입대가 승인되기 전에 자신의 나이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것
4.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자국의 선언을 언제든지 강화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모든 당사국들에게 알린다. 이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5. 아동권리협약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이 조 제1항의 연령 상향조정 의무는 군에 의해 운영되거나 군의 통제하에 있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 조

1. 국가의 군대와는 별개인 무장단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18세 미만인 자를 징집하거나 적대행위에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2. 당사국은 그러한 18세 미만인 자의 징집과 적대행위에의 이용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고 범죄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 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조의 적용은 무력충돌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5 조

이 의정서상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국의 국내법 또는 아동권리 실현에 보다 더 유리한 국제문서와 국제인도법상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6 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이 의정서 규정의 효과적 이행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그리고 여타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원칙과 규정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성인과 아동들에게 똑같이 널리 알리고 그 내용을 장려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이 의정서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징집되거나 적대행위에 이용되는 자들을 해산시키거나 군복무로부터 해제되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필요한 경우, 당사국은 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모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 7 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의 금지, 이 의정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기술적 협력 및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한, 재활과 사회로의 복귀 등 이 의정서를 이행하는 데 협

력한다. 이러한 지원과 협력은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다.

2. 위의 조치를 취할 입장에 있는 당사국은 이러한 지원을 기존의 다자 간, 양자간 또는 여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특히 총회의 규칙에 따라 설치된 자발적 기금을 통해 제공한다.

제 8 조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이내에 참여와 징집에 관한 규정의 실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포함하여 의정서의 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다.
2. 이러한 포괄적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후, 각 당사국은 협약 제44조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의 실행에 관한 추가 정보를 포함시킨다. 의정서의 여타 당사국은 매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의 실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 또는 협약에 서명한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사무총장은 협약과 의정서 수탁자로서의 자격으로, 모든 협약 당사국

들과 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에게 제13조에 따른 모든 선언서를 통보한다.

제 10 조

1. 이 의정서는 1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 발효한다.
2. 이 의정서의 발효 후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의정서에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해 이 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개월 후 발효한다.

제 11 조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기타협약 당사국과 서명국에게 이를 통고한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한다. 그러나 만약 의정서의 폐기를 통고한 당사국이 이 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 무력충돌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 폐기는 무력충돌이 종결되기 전까지 발효하지 아니한다.
2. 이러한 폐기는 폐기가 발효하는 날짜 이전에 발생하는 행위와 관련 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로부터 당사국을 면제하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이러한 폐기는 폐기가 발효하는 날짜 이전에 이미 위원회가 검토중인 사안들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를 어떤 식으로든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면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개정안을 심의하고 투표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

견을 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투표하는 당사국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가 수락한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하면,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기타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기존의 규정 및 자국이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해 구속된다.

제 13 조

1.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협약의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에게 송부한다.

◎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Considering that, in order furth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¹ and the implementation of its provisions, especially articles 1, 11, 21, 32, 33, 34, 35 and 36, it would be appropriate to extend the measures that States Parties should undertake in order to guarantee the protection of the child from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onsidering also tha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cognizes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protected from economic exploitation and from performing any work that is likely to be hazardous or to interfere with the child's education, or to be harmful to the child's health or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or social development,

Gravely concerned at the significant and increasing international traffic in children for the purpose of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Deeply concerned at the widespread and continuing practice of sex tourism, to which children are especially vulnerable, as it directly promotes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Recognizing that a number of particularly vulnerable groups, including girl children, are at greater risk of sexual exploitation and that girl children are disproportionately represented among the sexually exploited,

Concerned about the growing availability of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and other evolving technologies, and recall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bating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held in Vienna in 1999, in particular its conclusion calling for the worldwide criminalization of the production, distribution, exportation, transmission, importation, intentional possession and advertising of child pornography, and stressing the importance of closer cooper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s and the Internet industry,

Believing that the elimination of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will be facilitated by adopting a holistic approach, addressing the contributing factors, including underdevelopment, poverty, economic disparities, inequitable socio-economic structure, dysfunctional families, lack of education, urban-rural migration, gender discrimination, irresponsible adult sexual behaviour,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armed conflicts and trafficking in children,

Believing also that efforts to raise public awareness are needed to reduce consumer demand for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nd believing further in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global partnership among all actors and of improving law enforcement at the national level,

Noting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relevant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cluding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the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Enforcement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Parental Responsibility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No. 182 on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Encouraged by the overwhelming support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emonstrating the widespread commitment that exist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evention of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nd the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adopted at the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Stockholm from 27 to 31 August 1996, and the other relevant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of pertinent international bodies,

Taking due account of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s and cultural values of each people for the protection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child,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States Parties shall prohibit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s provided for by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2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Protocol:

- (a) Sale of children means any act or transaction whereby a child is transferred by any person or group of persons to another for remuneration or any other consideration;
- (b) Child prostitution means the use of a child in sexual activities for remuneration or any other form of consideration;
- (c) Child pornography means any representation, by whatever means, of

a child engaged in real or simulated explicit sexual activities or any representation of the sexual parts of a child for primarily sexual purposes.

Article 3

1.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as a minimum, the following acts and activities are fully covered under its criminal or penal law, whether such offences are committed domestically or transnationally or on an individual or organized basis:
 - (a) In the context of sale of children as defined in article 2:
 - (i) Offering, delivering or accepting, by whatever means, a child for the purpose of:
 - a. Sexual exploitation of the child;
 - b. Transfer of organs of the child for profit;
 - c. Engagement of the child in forced labour;
 - (ii) Improperly inducing consent, as an intermediary, for the adoption of a child in violation of applicabl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on adoption;
 - (b) Offering, obtaining, procuring or providing a child for child prostitution, as defined in article 2;
 - (c) Producing, distributing, disseminating, importing, exporting, offering, selling or possessing for the above purposes child pornography as defined in article 2.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law of a State Party, the same shall apply to an attempt to commit any of the said acts and to complicity or participation in any of the said acts.
 3. Each State Party shall make such offences punishable by appropriate penalt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ir grave nature.
 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its national law, each State Party shall take measures, where appropriate, to establish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offences established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Subject to the legal principles of the State Party, such liability of legal persons may be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5.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ensure that all persons involved in the adoption of a child act in conformity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rticle 4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3, paragraph 1, when the offences are committed in its territory or on board a ship or aircraft registered in that State.
2. Each State Party may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3, paragraph 1, in the following cases:
 - (a) When the alleged offender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a person who has his habitual residence in its territory;
 - (b) When the victim is a national of that State.
3. Each State Party shall als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the aforementioned offences when the alleged offender is present in its territory and it does not extradite him or her to another State Party on the ground that the offence has been committed by one of its nationals.
4. The present Protocol does not exclude any criminal jurisdiction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law.

Article 5

1.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3, paragraph 1, shall be deemed to be included as extraditable offences in any extradition treaty existing

between States Parties and shall be included as extraditable offences in every extradition treaty subsequently concluded between them,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et forth in such treaties.

2. If a State Party that makes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receives a request for extradition from another State Party with which it has no extradition treaty, it may consider the present Protocol to be a legal basis for extradition in respect of such offences. Extradition shall be subject to the conditions provid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State.
3. States Parties that do not make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shall recognize such offences as extraditable offences between themselves subject to the conditions provid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State.
4. Such offences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 of extradition between States Parties, as if they had been committed not only in the place in which they occurred but also in the territories of the States required to establish thei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5. If an extradition request is made with respect to an offence described in article 3, paragraph 1, and the requested State Party does not or will not extradite on the basis of the nationality of the offender, that State shall take suitable measures to submit the case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prosecution.

Article 6

1. States Parties shall afford one another the greatest measure of assistance in connection with investigations or criminal or extradition proceedings brought in respect of the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 3, paragraph 1, including assistance in obtaining evidence at their disposal necessary for the proceedings.

2. States Parties shall carry out their obligations under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in conformity with any treaties or other arrangements on mutual legal assistance that may exist between them. In the absence of such treaties or arrangements, States Parties shall afford one another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ir domestic law.

Article 7

States Parties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ir national law:

- (a) Take measures to provide for the seizure and confiscation, as appropriate, of:
 - (i) Goods, such as materials, assets and other instrumentalities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offences under the present protocol;
 - (ii) Proceeds derived from such offences;
- (b) Execute requests from another State Party for seizure or confiscation of goods or proceed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 (c) Take measures aimed at closing, on a temporary or definitive basis, premises used to commit such offences.

Article 8

1. States Parties shall adopt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 victims of the practices prohibited under the present Protocol at all stages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 particular by:

- (a) Recognizing the vulnerability of child victims and adapting procedures to recognize their special needs, including their special needs as witnesses;
- (b) Informing child victims of their rights, their role and the scope, timing and progress of the proceedings and of the disposition of

their cases;

- (c) Allowing the views, needs and concerns of child victims to be presented and considered in proceedings where their personal interests are affec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cedural rules of national law;
- (d) Providing appropriate support services to child victims throughout the legal process;
- (e) Protecting, as appropriate, the privacy and identity of child victims and taking measur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to avoid the inappropriat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hat could lead to the identification of child victims;
- (f) Providing, in appropriate cases, for the safety of child victims, as well as that of their families and witnesses on their behalf, from intimidation and retaliation;
- (g) Avoiding unnecessary delay in the disposition of cases and the execution of orders or decrees granting compensation to child victims.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uncertainty as to the actual age of the victim shall not prevent the initi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s, including investigations aimed at establishing the age of the victim.
3.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in the treatment b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children who are victims of the offences described in the present Protocol,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4. States Parties shall take measures to ensure appropriate training, in particular legal and psychological training, for the persons who work with victims of the offences prohibited under the present Protocol.
5. States Parties shall, in appropriate cases, adopt measures in order to protect the safety and integrity of those persons and/or organizations

involved in the prevention and/or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of victims of such offences.

6. Nothing in the present article shall be construed to be prejudicial to or inconsistent with the rights of the accused to a fair and impartial trial.

Article 9

1. States Parties shall adopt or strengthen, implement and disseminate laws, administrative measures, social policies and programmes to prevent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e present Protocol. Particular attention shall be given to protect children who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such practices.
2.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awareness in the public at large, including children, through information by all appropriate means, education and training, about the preventive measures and harmful effects of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e present Protocol. In fulfilling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article, States Parties shall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and, in particular, children and child victims, in such information an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including at the international level.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with the aim of ensuring all appropriate assistance to victims of such offences, including their full social reintegration and their full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4.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ll child victims of the offences described in the present Protocol have access to adequate procedures to seek, without discrimination,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those legally responsible.
5.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aimed at effectively

prohibiting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material advertising the offences described in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10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multilateral, regional and bilateral arrangements for the prevention, detection,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for acts involving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child sex tourism. States Parties shall als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ir authoriti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ssist child victims in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social reintegration and repatriation.
3.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address the root causes, such as poverty and underdevelopment, contributing to the vulnerability of children to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child sex tourism.
4. States Parties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provide financial, technical or other assistance through existing multilateral, regional, bilateral or other programmes.

Article 11

Nothing in the present Protocol shall affect any provisions that are mor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at may be contained in:

- (a) The law of a State Party;

(b) International law in force for that State.

Article 12

1. Each State Party shall, within two years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Protocol for that State Party, submit a report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 measures it has taken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
2. Following the submission of the comprehensive report, each State Party shall include in the reports they submit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any further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Other States Parties to the Protocol shall submit a report every five years.
3.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may request from States Parties fur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13

1. The present Protocol is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that is a party to the Convention or has signed it.
2. The present Protocol is subject to ratification and is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that is a party to the Convention or has signed it.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4

1. The present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the present Protocol or acceding to it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e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e month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15

1. Any State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Protocol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reafter inform the other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all States that have signed the Convention.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2. Such a denunciation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releasing the State Party from it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Protocol in regard to any offence that occurs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Nor shall such a denunciation prejudice in any way the continued consideration of any matter that is already under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Article 16

1. Any State Party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the proposed amendment to States Parties with a request that they indicate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mmunication,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2.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when it has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States Parties.
3. When an amendment enters into force, it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that have accepted it,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and any earlier amendments they have accepted.

Article 17

1. The present Protocol,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Protocol to all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all States that have signed the Convention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5)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동권리협약의 목적과 특히 제 1, 11, 21, 32, 33, 34조를 포함한 협약의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여겨고,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 그리고 위험하거나 교육을 방해하거나 아동의 건강, 혹은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혹은 사회적 발달에 해로운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아울러 고려하며,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목적으로 한 국제적 아동거래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음에 깊이 우려하고,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직접 조장함으로써 아동이 특히 그 표적인 섹스관광이 널리 퍼지고 지속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여자아동들과 같이 특히 희생양이 되기 쉬운 많은 유약한 대상들이 성적 착취의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여자아동들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인구 중 과다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5) 2000. 5. 25 유엔채택
2000. 9. 6 우리나라가입 · 서명

인터넷과 다른 관련 기술상에 아동 포르노그래피 이용가능성이 점증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1999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퇴치에 관한 국제회의”와 특히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생산, 배급, 수출, 운송, 수입, 고의적 취득, 그리고 광고하는 행위 등을 전세계적으로 불법화할 것을 촉구하기로 한 동 회의의 결의를 상기하며, 그리고 정부와 인터넷 업계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제거는 저개발, 빈곤, 경제적 불균형,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 가족붕괴, 교육의 결핍, 도·농간 이동, 성차별, 무분별한 성인의 성 실태, 유해한 전통풍습, 무력충돌, 그리고 아동거래 등과 같은 원인요소들을 밝혀내는 총체적 접근법에 의하여 용이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의 의식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으며, 모든 행위자들 간의 범세계적 협력 강화의 중요성과 국가수준에서 국내법 집행의 강화의 중요성을 또한 믿으며,

국제 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아동유괴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 부모의 책임 및 아동보호조치에 있어서 관할권,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심각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 및 이의 즉각적 근절을 위한 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 182호와 같은 아동보호 관련 국제법률문서의 규정들에 유념하고,

아동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 권리협약에 대한 전폭적 지지에 고무되고,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 금지를 위한 행동 프로그램과

1996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스톡홀름에서 열린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반대하는 세계의회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강령의 규정들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며,

아동보호와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들의 중요성을 정당히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금지한다.

제 2 조

이) 의정서의 목적상,

- 가. 아동매매란, 보수나 어떠한 다른 댓가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모든 행위나 거래를 의미한다.
- 나. 아동매춘이란, 보수나 어떠한 다른 형태의 댓가를 목적으로 아동을 성적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 아동 포르노그라피란, 어떠한 방법으로든, 실제 또는 가상의 명백한 성적 활동에 관련된 아동에 대한 묘사나 성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적 부위에 대한 묘사를 의미한다.

제 3 조

1. 모든 당사국은 최소한의 조치로써 다음의 행위와 활동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혹은 개인 차원에서 혹은 단체 차원에서 행해졌는지에 상관 없이 다음의 행위와 활동들이 모두 자국 형법에 충분히 포함되는 것을 보장한다.

가. 상기 제2조에서 정의된 아동매매와 관련하여,

(1)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아동을 제공, 인도 또는 접수하는 행위 즉,

(가) 아동의 성 착취

(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아동의 장기 이전

(다) 아동을 강제노동에 투입

(2) 입양 관련 국제법률문서의 규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대리인이 아동입양에 필요한 동의를 부적절하게 얻어내는 행위

나. 제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아동매춘을 목적으로 아동을 제공, 획득, 조달 및 공급하는 행위

다. 제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생산, 배급, 살포, 수입, 수출, 제공, 판매 또는 상기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2.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의 미수 및 공모 또는 가담 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모든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동 범죄가 적절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4. 국내법 규정에 의거, 모든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서 확립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책임을 수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의 법원칙에 따라, 법인의 이러한 책임은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책임일 수 있다.

5. 당사국은 아동입양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관련 국제 법률문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도록 모든 적절한 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취한다.

제 4 조

1. 당사국은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행위들이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상에서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재판권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다.
2. 모든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3조제1항에 명시된 행위들에 대해 재판권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 가. 위의 행위를 범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가 동 국가의 국민이거나 동 국가의 영토 내에 일상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나. 피해자가 동 국가의 국민일 경우
3. 또한, 위에서 언급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는 자가 동국의 영역에 있고 동국이 그 자가 자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다른 국가로 인도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국은 동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다.
4. 이 의정서는 국내법에 따른 어떠한 형사재판권의 행사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1.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범죄행위들은 당사국간에 이미 존재하는 범죄인인도조약상 인도대상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이러한 기존의 조약들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그들간에 새로이 체결되는 범죄인인도조약상에서도 인도대상 범죄로 포함된다.
2. 위 범죄행위자의 인도를 기존 범죄인인도조약의 존재에 따른 조건부로 하는 당사국이 자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인도 요청을 받을 경우, 전자의 국가는 본 의정서를 그러한 행위와 관련한 범죄인인도를 위한 법적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범죄인인도는 인도요청을 받은 국가의 국내법에 명시된 요건들

에 따른다.

3. 범죄인 인도를 기준 범죄인인도조약의 존재에 따른 조건부로 하지 않은 당사국들은 인도요청을 받은 국가의 국내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이러한 범죄들을 그들간의 인도대상범죄로 인정한다.
4. 당사국들간의 범죄인 인도목적상, 이러한 범죄들은 실제 그 행위가 발생한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제4조에 따라 그 행위들에 대한 재판권을 확립할 것이 요구되는 국가들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5. 만약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행위들과 관련하여 인도요청이 이루어지고 인도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행위자의 국적을 이유로 인도하지 않거나 인도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국가는 행위자를 기소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사건을 회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6 조

1. 당사국은 위의 절차들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서의 지원 등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범죄행위들과 관련하여 야기된 조사, 형사상 절차, 인도 절차와 관련하여 최대의 원조를 상호 제공한다.
2. 당사국은 기존의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이나 기타 약정에 따라 제1항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약이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상호 지원한다.

제 7 조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을 행한다.

가.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을 압수 및 몰수하기 위한 조치

(1) 본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행위들을 범하거나 이를 조장하는데 사용된 도구, 자산, 그리고 기타 수단과 같은 물품

(2) 위의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수익

- 나. 가호(1)목에 언급된 물품이나 수익에 대한 타 당사국의 압수 또는 몰수 요청의 집행
- 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범하는데 사용된 위에 명시된 재산들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조치

제 8 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상에 금지된 범죄행위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형사재판단계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피해아동의 취약성을 인식하여, 그들의 증인으로서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동 절차를 조정
 - 나. 피해아동들에게 그들의 권리, 그들의 역할과 범위, 재판일정 및 진행상황, 사건의 판정결과에 대해 알려주는 것
 - 다. 피해아동들의 견해, 요구, 관심사가 그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소송절차에서 동국 국내법의 절차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고려되도록 하는 것
 - 라. 소송절차과정 내내 피해아동들에게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마. 피해아동의 사생활과 신원을 보호하고 피해아동의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정보가 부적절하게 누출되지 않도록 국내법에 의거한 조치를 취하는 것
 - 바. 적절한 경우, 협박과 보복으로부터 피해아동의 가족과 증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피해아동들에 대한 안전을 제공하는 것
 - 사. 사건에 대한 판정의 불필요한 지연, 피해아동들에 대한 보상지급 명령 또는 판결 집행의 불필요한 지연을 피할 것

2. 당사국은 피해자의 실제연령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연령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포함한 범죄수사 착수가 금지되어서는 아니된다 는 것을 보장한다.
3. 당사국은 본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자인 아동들을 형사재판제도에 따라 다루는 데 있어서 아동의 최대이익이 최우선적 고려사항 이라는 점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본 의정서에서 금지된 범죄행위의 피해자들을 보조할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 특히 법적 · 심리적 훈련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5.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러한 범죄행위의 방지 및/또는 범죄행위 피해자들의 보호 · 재활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의 안전 및 완전한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6.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피고인이 공정하고 공명정대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손상시키거나 이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행정 조치,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을 채택, 강화, 실행, 그리고 보급한다. 위 범죄행위들에 특히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이 주어진다.
2.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한 정보,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행위들에 대한 예방 조치와 그 범죄행위들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아동을 포함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킨다. 본 조항 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당사국은 지역사회 그리고 특히 아동 및 아동피해자의 국제적 차원을 포함한 이러한 정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장려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행위 피해자들의 완전한 사회적 재통합과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포함한 이들에 대한 모든 적절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행위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아동들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그 행위에 법적 책임이 있는 자들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5.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행위들을 광고하는 자료의 생산과 배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10 조

1. 당사국은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 포르노그래피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섹스관광에 연루된 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예방, 탐지, 수사, 기소 및 처벌을 위한 다자간, 지역적, 양자간 약정에 의한 국제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당국, 국내외적 비정부간 기구 및 국제기구들간의 국제적 협력과 조정을 증진시킨다.
2. 당사국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적 · 심리적 회복, 사회로의 복귀 및 귀환을 돋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킨다.
3. 당사국은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 포르노그래피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섹스관광 등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을 조장하는 빈곤, 저개발 등과 같은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강화를 증진시킨다.
4. 이렇게 할 위치에 있는 당사국은 기존의 다자간, 지역적, 양자간 또는 기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재정적, 기술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제 11 조

이 의정서의 어떠한 내용도 아동권리의 실현에 더 큰 도움이 되는 아래에 포함된 규정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가. 당사국의 국내법
-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 12 조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이내에, 의정서의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다.
2. 이러한 포괄적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후, 각 당사국은 협약 제44조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추가 정보를 포함시킨다. 의정서의 여타 당사국은 매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 또는 협약에 서명한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협약의 당사국과 서명국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14 조

1. 이 의정서는 1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 발효한다.
2. 이 의정서 발효 후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의정서에 가입하는 각국가에 대해 이 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개월 후 발효한다.

제 15 조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기타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에게 이를 통보한다.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한다.
2. 이러한 폐기는 당사국에 대하여 폐기의 발효전 발생한 범죄와 관련, 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로부터 당사국을 면제하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이러한 폐기는 폐기가 발효하는 날짜 이전에 이미 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안들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를 어떠한 식으로든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1.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투표에 불이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투표하는 당사국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

택된 개정안은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가 수락한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하면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기타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기존의 규정 및 자국이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해 구속된다.

제 17 조

1.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협약의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에게 송부한다.

◎ 국제연합 국제조직 범죄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Preamble

The States Parties to this Protocol,

Declaring that effective action to prevent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requires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approach in the countries of origin, transit and destination that includes measures to prevent such trafficking, to punish the traffickers and to protect the victims of such trafficking, including by protecting their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despite the existence of a variety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taining rules and practical measures to combat the exploitation of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there is no universal instrument that addresses all aspects of trafficking in persons,

Concerned that, in the absence of such an instrument, persons who are vulnerable to trafficking will not be sufficiently protected,

Recalling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3/111 of 9 December 1998, in which the Assembly decided to establish an open-ended intergovernmental ad hoc committee for the purpose of elaborating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of discussing the elaboration of, *inter alia*, an international instrument addressing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Convinced that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ith an international instrument for the

prevention,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will be useful in preventing and combating that crime,

Have agreed as follows:

I .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Rel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1. This Protocol supplement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t shall be interpreted together with the Convention.
2.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is Protocol unless otherwise provided herein.
3. The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is Protocol shall be regarded as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rticle 2

Statement of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Protocol are:

- (a) To prevent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women and children;
- (b) To protect and assist the victims of such trafficking, with full respect for their human rights; and
- (c)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States Parties in order to meet those objectives.

Article 3

Use of terms

For the purposes of this Protocol:

- (a) Trafficking in persons shall mean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Exploitation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or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ur or services, slavery or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servitude or the removal of organs;
- (b) The consent of a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to the intended exploitation set forth in subparagraph (a) of this article shall be irrelevant where any of the means set forth in subparagraph (a) have been used;
- (c)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a child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shall be considered trafficking in persons even if this does not involve any of the means set forth in subparagraph (a) of this article;
- (d) Child shall mean any person under eighteen years of age.

Article 4

Scope of application

This Protocol shall apply, except as otherwise stated herein, to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he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is Protocol, where those offences are transnational in nature and involve an organized criminal group, as well as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uch offences.

Article 5

Criminalization

1. Each State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as criminal offences the conduct set forth in article 3 of this Protocol, when committed intentionally.
2. Each State Party shall also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as criminal offences:
 - (a) Subject to the basic concepts of its legal system, attempting to commit an off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 (b) Participating as an accomplice in an off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 (c) Organizing or directing other persons to commit an off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I. Protec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Article 6

Assistance to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1. In appropriate cases and to the extent possible under its domestic law, each State Party shall protect the privacy and identity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ncluding, *inter alia*, by making legal proceedings relating to such trafficking confidential.
2.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its domestic legal or administrative system contains measures that provide to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appropriate cases:
 - (a) Information on relevant court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 (b) Assistance to enable their views and concerns to be presented and considered at appropriate 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offenders, in a manner not prejudicial to the rights of the defence.

3. Each State Party shall consider implementing measures to provide for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recovery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ncluding, in appropriate cases, in cooper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and other elements of civil society, and,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 (a) Appropriate housing;
 - (b) Counselling and information, in particular as regards their legal rights, in a language that the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can understand;
 - (c) Medical, psychological and material assistance; and
 - (d) Employment, educational and training opportunities.
4. Each State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age, gender and special needs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particular the special needs of children, including appropriate housing, education and care.
5. Each State Party shall endeavour to provide for the physical safety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while they are within its territory.
6.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its domestic legal system contains measures that offer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compensation for damage suffered.

Article 7

Status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receiving States

1. In addition to taking measures pursuant to article 6 of this Protocol, each State Party shall consider adopting legislative or other appropriate measures that permit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to remain in its territory, temporarily or permanently, in appropriate cases.

2.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 contai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each State Party shall give appropriate consideration to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factors.

Article 8

Repatria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1. The State Party of which a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is a national or in which the person had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at the time of entry into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Party shall facilitate and accept, with due regard for the safety of that person, the return of that person without undue or unreasonable delay.
2. When a State Party returns a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to a State Party of which that person is a national or in which he or she had, at the time of entry into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Party,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such return shall be with due regard for the safety of that person and for the status of any legal proceedings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person is a victim of trafficking and shall preferably be voluntary.
3. At the request of a receiving State Party, a requested State Party shall, without undue or unreasonable delay, verify whether a person who is a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is its national or had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in its territory at the time of entry into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Party.
4.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turn of a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who is without proper documentation, the State Party of which that person is a national or in which he or she had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at the time of entry into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Party shall agree to issue, at the request of the receiving State Party, such travel documents or other authorization as may be necessary to

enable the person to travel to and re-enter its territory.

5. This article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 afforded to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by any domestic law of the receiving State Party.
6. This article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applicabl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or arrangement that governs, in whole or in part, the return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II. Prevention, cooperation and other measures

Article 9

Preven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1. States Parties shall establish comprehensive policies, programmes and other measures:
 - (a) To prevent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and
 - (b) To protect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from revictimization.
2.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undertake measures such as research, information and mass media campaigns and social and economic initiatives to prevent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3. Policies, programmes and other measur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shall, as appropriate, include cooper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and other elements of civil society.
4. States Parties shall take or strengthen measures, including through bilateral or multilateral cooperation, to alleviate the factors that make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vulnerable to trafficking,

such as poverty, underdevelopment and lack of equal opportunity.

5. States Parties shall adopt or strengthen legislative or other measures, such as educational, social or cultural measures, including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to discourage the demand that fosters all forms of exploitation of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that leads to trafficking.

Article 10

Information exchange and training

1. Law enforcement, immigration or other relevant authorities of States Parties shall, as appropriate, cooperate with one another by exchanging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domestic law, to enable them to determine:
 - (a) Whether individuals crossing or attempting to cross an international border with travel documents belonging to other persons or without travel documents are perpetrators or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 (b) The types of travel document that individuals have used or attempted to use to cross an international border for the purpose of trafficking in persons; and
 - (c) The means and methods used by organized criminal groups for the purpose of trafficking in persons, including the recruitment and transportation of victims, routes and links between and among individuals and groups engaged in such trafficking, and possible measures for detecting them.
2. States Parties shall provide or strengthen training for law enforcement, immigration and other relevant officials in the preven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The training should focus on methods used in preventing such trafficking, prosecuting the traffickers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victims, including protecting the victims from the traffickers. The

training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the need to consider human rights and child- and gender-sensitive issues and it should encourage cooper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and other elements of civil society.

3. A State Party that receives information shall comply with any request by the State Party that transmitted the information that places restrictions on its use.

Article 11

Border measures

1. Without prejudice to international commitments in relation to the free movement of people, States Parties shall strengthen, to the extent possible, such border controls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and detect trafficking in persons.
2. Each State Party shall adopt legislative or other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to the extent possible, means of transport operated by commercial carriers from being used in the commission of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is Protocol.
3. Where appropriate, and without prejudice to applicable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measures shall include establishing the obligation of commercial carriers, including any transportation company or the owner or operator of any means of transport, to ascertain that all passengers are in possession of the travel documents required for entry into the receiving State.
4. Each State Party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to provide for sanctions in cases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set forth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5. Each State Party shall consider taking measures that permit,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the denial of entry or revocation of visas of persons implicated in the commission of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Protocol.
6.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27 of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shall consider strengthening cooperation among border control agencies by, *inter alia*,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direct channels of communication.

Article 12

Security and control of documents

Each State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within available means:

- (a) To ensure that travel or identity documents issued by it are of such quality that they cannot easily be misused and cannot readily be falsified or unlawfully altered, replicated or issued; and
- (b) To ensure the integrity and security of travel or identity documents issued by or on behalf of the State Party and to prevent their unlawful creation, issuance and use.

Article 13

Legitimacy and validity of documents

At the request of another State Party, a State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verify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legitimacy and validity of travel or identity documents issued or purported to have been issued in its name and suspected of being used for trafficking in persons.

IV. Final provisions

Article 14

Saving clause

1. Nothing in this Protocol shall affect the right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States and individual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 particular, where applicable, the 1951 Convention 4 and the 1967 Protocol 5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s contained therein.
2. The measures set forth in this Protocol shall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a way that is not discriminatory to persons on the ground that they are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ose measures shall b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Article 15

Settlement of disputes

1.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settle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Protocol through negotiation.
2.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Protocol that cannot be settled through negoti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those States Parties,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those States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any one of those States Parties may refer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 request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of the Court.
3. Each State Party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or accession to this Protocol, declare that it does not consider itself bound by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other States Parties shall not be bound by paragraph 2 of this article with respect to any State Party that has made such a reservation.

4. Any State Party that has made a reserv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may at any time withdraw that reservation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6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nd accession

1. This Protocol shall be open to all States for signature from 12 to 15 December 2000 in Palermo, Italy, and thereafter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until 12 December 2002.
2. This Protocol shall also be open for signature b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provided that at least one member State of such organization has signed this Protoco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This Protocol is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may deposit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if at least one of its member States has done likewise. In that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uch organization shall declare the extent of its competence with respect to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Protocol. Such organization shall also inform the depositary of any relevant modification in the extent of its competence.
4. This Protocol is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or an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of which at least one member State is a Party to this Protocol.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time of its accession,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declare the extent of its competence with respect to matters governed by this Protocol. Such organization shall also inform the depositary of any relevant modification in the extent of its competence.

Article 17

Entry into force

1.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for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except that it shall not enter into forc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ny instrument deposited by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be counted as additional to those deposited by member States of such organization.
2. For each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this Protocol after the deposit of the fortieth instrument of such action,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by such State or organization of the relevant instrument or on the date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ichever is the later.

Article 18

Amendment

1. After the expiry of five years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a State Party to the Protocol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reupon communicate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States Parties

and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deciding on the proposal. The States Parties to this Protocol meeting a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effort to achieve consensus on each amendment. If all efforts at consensus have been exhausted and no agreement has been reached, the amendment shall, as a last resort, require for its adoption a two-thirds majority vote of the States Parties to this Protocol present and voting at the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2.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in matters within their competence, shall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under this article with a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number of their member States that are Parties to this Protocol. Such organizations shall not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if their member States exercise theirs and vice versa.
3.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s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States Parties.
4.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in respect of a State Party ninety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such amendment.
5. When an amendment enters into force, it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expressed their consent to be bound by it. Other States Parties shall still be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and any earlier amendments that they have ratified, accepted or approved.

Article 19

Denunciation

1. A State Party may denounce this Protocol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uch denunciation shall become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2.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cease to be a Party to this Protocol when all of its member States have denounced it.

Article 20

Depositary and languages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s designated depositary of this Protocol.
2. The original of this Protocol,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국제연합 국제조직 범죄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적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 이러한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인신매매범들을 처벌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보호 등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근원국, 경유국 및 목적국에서 종합적인 국제적 접근방법이 요구됨을 선언하며,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착취를 퇴치하기 위한 규칙과 실질적인 조치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국제적 문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보편적인 문서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이러한 문서의 부재로 인하여 인신매매에 취약한 자들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것임을 우려하며,

국제연합총회가 1998년 12월 9일자 총회결의 53/111에서 국제조직범죄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제협약을 성안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다룰 국제적 문서의 성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무기한의 정부간 임시위원회를 설치하였음을 상기하고,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및 처벌에 관한 국제적인 문서로 협약을 보충하는 것이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데 유용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의 관계

1.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한다. 이 의정서는 협약과 함께 해석한다.
2. 협약의 규정은 이 의정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의정서에 준용 한다.
3. 이 의정서 제5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는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로 간주된다.

제2조

목 적

이 의정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것
- 나.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 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

제3조

용어의 사용

이 의정서의 목적상,

- 가.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

의 강박 · 납치 · 사기 · 기만, 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의 이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 또는 혜택의 제공 또는 접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반, 이전, 은닉, 인수를 의미한다. 착취는 타인의 매춘 또는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또는 서비스, 노예제도 또는 노예제도와 유사한 관행, 종속 또는 장기의 절제를 포함한다.

- 나.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무의미하다.
- 다.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반, 이전, 은닉, 또는 인수는 이러한 행위가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 라.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의정서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의정서 제5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행위가 성질상 국제적이며 조직범죄집단이 관련된 경우, 동 범죄행위의 예방, 수사 및 기소, 그리고 이러한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에 적용된다.

제5조

범죄화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 제3조에 규정된 행위가 고의로 행해진 경우, 자국의 국내법상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한다.
2. 각 당사국은 또한 다음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한다.

- 가. 자국의 법체계의 기본 개념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범죄행위의 미수
- 나.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를 조직하거나 타인에게 범하도록 지시하는 것

제 2 장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제6조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원을 보호한다. 이는 특히 이러한 인신매매와 관련된 법적절차를 비공개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의 국내법 체계 또는 행정제도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다음을 제공하는 조치를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 가. 관련 재판절차 및 행정절차에 관한 정보
 - 나.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절한 형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견해와 우려를 제시하여 심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 3.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비정부간기구, 기타 관련 기구 및 기타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특히 다음을 포함,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을 위하여 제공할 이행조치를 고려한다.
 - 가. 적절한 주거지
 - 나. 인신매매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지는 상담 및 정보, 특히 법적 권리에 관한 상담 및 정보
 - 다. 의료, 심리적 및 물질적 지원 제공
 - 라. 고용, 교육 및 훈련기회

4. 각 당사국은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신매매 피해자의 연령, 성별 및 특별한 요구, 특히 적절한 주거, 교육 및 보호를 포함하는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한다.
5. 각 당사국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자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들의 신변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체계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조치를 포함하도록 보장 한다.

제7조

접수국내에서의 인신매매 피해자의 지위

1. 이 의정서 제6조상의 조치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일시적으로 자국의 영역내에 체류하도록 허가하는 입법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인도주의적 및 온정주의적 요소를 고려한다.

제8조

인신매매 피해자의 송환

1. 접수당사국 입국 당시에 인신매매 피해자가 그 국민이거나 영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당사국은 동인의 안전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지체없이 동인의 귀국을 촉진하고 수락한다.
2. 어느 당사국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접수당국에 입국 당시 그 국민이거나 영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당사국으로 동 피해자를 송환하는 경우, 이러한 송환은 동인의 안전 및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사실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진전상황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그리고 가급적 자

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이 조는 접수국의 국내법에 의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권리의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이 조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송환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규율하는 적용가능한 양자 또는 다자의 협정 또는 약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접수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 당사국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자체없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접수국의 영역에 입국 당시 자국의 국민이거나 영주권자였는지를 확인한다.
6. 적절한 문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송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수당사국에 입국당시 인신매매 피해자가 국민이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당사국은 접수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자가 자국의 영역안으로 이동 및 귀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필요한 여행 문서 또는 허가증을 발급하는 데 동의한다.

제9조

인신매매의 방지

1. 당사국은 다음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 프로그램 및 기타 조치를 확립 한다.
 - 가. 인신매매의 방지 및 퇴치
 - 나. 인신매매피해자가 또다시 인신매매에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 특히 여성과 아동의 보호
2. 당사국은 인신매매의 방지 및 퇴치를 위해 연구, 홍보 및 대중매체 캠페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사업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이 조에 따라 확립된 정책, 프로그램 및 기타 조치는 적절한 경우 비정부 기구, 기타 관련기구 및 기타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포함한다.
4. 당사국은 빈곤 · 저개발 및 동등한 기회의 부재 등 특히 여성과 아동을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자 또는 다자 협력을 포함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강화한다.
5. 당사국은 인신매매를 야기하는 모든 형태의 인신착취, 특히 여성과 아동의 착취를 조장하는 수요를 감축시키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 협력방식을 포함한 입법 또는 교육 · 사회 · 문화적 조치를 채택 또는 강화한다.

제 3 장

예방, 협력 및 기타 조치

제10조

정보교환 및 훈련

1. 당사국들의 법집행, 출입국 또는 기타 유관 당국은, 적절한 경우, 다음을 판단하기 위해 자국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상호 협력한다.
 - 가. 타인의 여행문서를 소지하거나 여행문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국경을 통과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자가 인신매매범인지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인지 여부
 - 나.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국경을 통과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이 시도된 여행문서의 유형
 - 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모집 및 운반, 이러한 인신매매에 관여하는 개인 및 집단간의 경로 및 연결점 등 조직범죄집단이 인신매매를 위해 사용하는 수단 및 방법, 그리고 가능한 인신매매범의 탐지 조치
2. 당사국은 인신매매의 예방을 위해 법집행, 출입국 및 기타 관련 관리

들을 위한 훈련을 제공·강화한다. 훈련은 이러한 인신매매의 예방, 인신매매범의 기소, 인신매매범으로부터의 피해자의 보호를 포함한 인신매매피해자의 권리보호 방법에 중점을 둔다. 훈련은 또한 인권, 아동 인지적 및 성 인지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비정부간 기구, 여타 관련 기구 및 기타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3. 정보를 접수한 당사국은 동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이 정보의 사용에 부과한 제약에 따른다.

제11조

국경조치

1.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을 침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경통제를 강화한다.
2. 각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업운송인이 운영하는 운송수단이 의정서 제5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적절한 경우, 그리고 적용가능한 국제협약을 침해함이 없이, 이러한 조치는 모든 승객들이 접수국의 입국에 요구되는 여행문서를 소지하고 있을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모든 운송회사, 모든 운송수단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 등 상업운송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에 연루된 자의 입국 금지 또는 사중 취소를 허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한다.

6. 협약 제27조를 침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특히 직접적인 통신경로를 수립·유지함으로써 국경통제관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12조

문서의 안전 및 통제

각 당사국은 가능한 수단에 따라 다음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자국이 발급한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가 오용되거나 위조되거나 불법적으로 변조·복제·발급될 수 없을 정도의 품질을 갖출 것을 보장하는 것
- 나. 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당사국을 대표하여 발급된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의 무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동 문서의 불법 생산·발급 및 사용을 예방하는 것

제13조

문서의 적법성 및 유효성

다른 당사국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자국의 이름으로 발급되었거나 발급된 것으로 알려진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가 의심받는 경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내에 동 문서의 적법성 또는 유효성을 검증한다.

제 4 장 최종규정

제14조

보존조항

1. 이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특히 적용가능한 경우, 난민의 지위 및 불송환의 원칙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 등 국제법상의 국가 및 개인의 기타 권리·의무 및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의정서에 규정된 조치는 어떠한 자들이 인신매매의 희생자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차별적인 방식으로 해석 ·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치의 해석 · 적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비차별 원칙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해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분쟁을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합리적인 기간안에 교섭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다. 만일 중재 요청일로부터 6월이 지난 후 동 당사국들이 중재의 구성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국제 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요청함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서명,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또는 가입시 이 조 제2항에 기록된다고 여기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다. 타방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행한 어느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 이 조 제2항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3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언제라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통고함으로써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16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의정서는 이태리 팔레르모에서 2000년 12월 12일부터 15일간 그 이후에는 2002년 12월 12일까지 뉴욕에 소재한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게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최소 일개 회원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의정서에 서명을 한 경우, 동 기구에게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이 의정서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는다. 비준, 수락 또는 승인문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만일 동 기구의 최소 일개 회원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문서를 기탁한 경우, 기구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문서를 기탁할 수 있다. 이러한 기구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문서상에 이 의정서가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기구의 권한의 범위를 선언한다. 이러한 기구는 또한 동 기구의 권한 범위에 있어서의 모든 관련 수정내용을 수탁자에게 통지한다.
4. 이 의정서는 모든 국가 또는 최소 일개 회원국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모든 지역경제통합기구에게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문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가입서 기탁시 이 의정서가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권한의 범위를 선언한다. 이러한 기구는 또한 동 권한 범위에 있어서의 모든 관련 수정내용을 수탁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40번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문서 기탁일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단, 이 의정서는 협약의 발효이전에 발효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동 기구의 회원국들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하여 계산되지 아니한다.
2. 40번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문서가 기탁된 후 이 의정서를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여기에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이러한 국가 또는 기구가 관련문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 또는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날 중 나중일자에 발효한다.

제18조

개 정

1. 이 의정서 발효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사무총장은 동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당사국 및 협약 당사국회의에 동 개정안을 통보한다. 당사국 회의에 참석하는 이 의정서는 당사국은 각 개정안에 대하여 콘센서스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만일 콘센서스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동 개정안은 최후의 수단으로 채택을 위하여 동 당사국회의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2 다수결 표결이 요구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들의 권한내의 사항에 대하여 이 의정서 당사자인 기구의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이 조에 따라 행사한다. 동 기구의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반대로 동 기구의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당사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된다.
4. 이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당사국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동 개정에 대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승인문서를 기탁한 일자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5. 개정안이 발효하는 때에, 동 개정안은 개정안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당사국을 구속한다. 기타 당사국은 여전히 이 의정서의 규정 및 동국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승인한 이전의 개정에 구속된다.

제19조

탈 퇴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통고함으로써 이 의정서를 탈퇴 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사무총장이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이 의정서를 탈퇴하는 때에 이 의정서의 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

제20조

수탁자 및 언어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2. 아랍어본, 중국어본, 영어본, 불어본, 러시아어본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전권 이임대표들은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4. 아동 성착취 관련 기사

[해외기고] '어린이 성착취' 단호히 대처를

캐롤 벨라미(유엔아동기금 총재)

(중앙일보 2001. 12. 14)



지금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어린이들은 지구 어느 곳에선가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

도쿄(東京) 교외의 한적한 거리에서 방콕의 사창가, 모스크바의 기차역, 탄자니아의 고속도로, 마닐라의 거리 그리고 파리의 포르노 웹사이트에 이르기까지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상 다반사처럼 벌어지고 있다.

어린 소녀와 소년들은 어른들의 추악한 탐욕이 만들어낸 수십억달러 규모의 섹스산업의 부속품처럼 거래되고 있다.

연간 1백만명에 달하는 동남아시아의 어린이들이 섹스산업에 내몰리고 있으며, 지난 30년 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만 3천만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돈벌이를 위해 성적 착취를 당했다. 이제 우리는 이같은 현실에 분개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17~20일 일본 요코하마(橫濱)에서 열리는 '어린이 성 착취 방지를 위한 제2회 세계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들은 이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어린이 성 착취 문제는 어린이들의 인권 침해로 해석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교육을 받고, 자유롭게 뛰놀 권리가 있다. 하지만 성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성적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평생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그렇다고 성 폭행이나 성 착취가 사창가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에 대한 성 폭력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것도 아이들이 신뢰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대방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매춘산업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난민촌과 고아원 등에 버려진 여자아이들은 섹스산업의 표적이 되고 있다.

상업적인 성 거래가 만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쟁과 가난,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붕괴, 선정적인 매스미디어 등 다양하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1996년 각국 정부는 스톡홀름에서 열린 '어린이 성착취 방지를 위한 제1회 세계회의'에서 그간 공공연히 자행돼온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스톡홀름 회의 이후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니세프에서도 폭력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다. 이 결과 어린이들의 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조직들에 대한 조사작업 역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아동인신매매와 매춘·포르노·마약밀매 등 불법행위에 어린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과 다국적 조직범죄에 대항하는 유엔협약, 그리고 유엔의 어린이인권협약(CRC)은 전 세계 차원에서 마련한 어린이 보호장치다. 이번 요코하마 회의에서는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처리 문제가 논의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행동보다는 개개인의 관심과 열의가 우선한다. 유니세프는 지난해부터 전세계 어린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의 '어린이를 위한 세계운동(Global Move-

ment for Children)'을 추진하고 있다.

요코하마 회의는 어린이들의 성 착취문제가 오늘날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사실을 또 한차례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세계 수백만 어린이들의 생명과 미래는 전적으로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

[Editorial] Global war with child sex

(The Korea Herald 2001. 12. 22)

When it comes to the sexual trade of minors, Korea does not lag far behind some of those countries most widely known for child prostitution. Recent government statistics revealed that no less than 70 percent of all women housed at rehabilitation institutions for prostitutes are youths under 19 years of age. For those men who favor sex with young girls and those engaged in the fast-growing business of underage prostitution in this country, the Second World Conference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Yokohama, Japan, this week, may ring an alarming bell.

Over 3,000 delegates from 134 countries who gathered at the four-day conference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protection of children from all forms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including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The delegates, representing governmen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agencies, agreed to reinforce their joint endeavors to address various root causes that place children at risk of exploitation in sex markets around the world.

There are diverse reasons that drive children out of their families to fall victim of the sex business. Poverty, gender discrimination, war, organized crime, family dysfunction and globalization are among the prominent reasons behind the dire circumstances of these children abused by greedy and immoral adults. As the latest UNICEF report claimed,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a clandestine scourge in most societies that hardly comes to the attention of governments. It is not

even recognized as a problem, so accurate statistics are hard to attain.

As UNICEF Executive Director Carol Bellamy has stated, however, millions of children throughout the world are being bought and sold to be used as sex slaves. As a strategy to fight the wanton destruction of young lives and futures, the Yokohama Global Commitment 2001 called for an early ratification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It also emphasized closer networking among the key actors of combat at the international, inter-regional, regional, national and local levels, including the judicial, immigration and police authorities.

The Yokohama congress reviewed developments since the first conference in Stockholm in 1996. During the last five years, the conference acknowledged that there have been changes in laws, new programs to protect children and support for those who have been exploited in a number of countries. Awareness of the issue has also been remarkably increased. Nevertheless, the problem still persists around the world. Protection has worked in some areas, but demands for child sex have shifted to seek out new areas of supply benefiting mostly from the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In step with the global movement, the Korean government put into force the Act on Sexual Protection of the Youth last year. The law prescribes the maximum three-year imprisonment on those convicted of paying for sex with minors. It also provides the public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ose who have purchased underage prostitution. It is a pity, though, that these legal measures have been of little help in curbing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this country.

On the contrary, the statistics compil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wed a drastic increase in sex-related offenses including teen prostitution following the first public disclosure of the list of men who purchased sex of underage girls in August this year. The police figures said that a total of 79 cases of sex-related crimes occurred in the country during September, that represented a 41 percent increase over the previous month. A total of 65 men were arrested for purchasing sex from underage girls across the country in September, a startling 85 percent jump from 35 in August.

With the preventive effect of disclosure remaining deeply skeptical,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plans to announce the second list of offenders in February next year. As an official at the commission expects, the punitive measure needs more time to prove its eventual impact on the ill-oriented machismo of those who seek unlawful sex with young girls. A crucial message from the Yokohama congress is that governments need to find more serious ways to tackle the demand side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not to mention how to save the youngsters from entering into the inhumane business.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2차 세계회의 참가보고서

발행처 : 여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발행일 : 2002년 3월 16일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 · 313 · 7593

발간등록번호 11-1060020-000047-14